동 지침은 기본 가이드라인으로서 "학생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의 대응체계와 코로나19 관련 각종 지침을 기본으로 하여 교육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앙방역대책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가 협의하여 코로나19의 상황에 맞게 구성한 기본 가이드라인입니다.

시도교육청에서는 지역별 확산 상황을 고려하여 차별화한 적용이 가능하나, 학교현장의 혼선 예방을 위해 (지역)방역당국, 교육부 등과 사전에 공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지침은 '21년 2학기부터 적용되며, 소급 적용하지 않습니다.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제5판)

2021. 7. 19.

교육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앙방역대책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주요 개정사항]

목차	주요 개정사항
Ⅱ. 코로나19 대응 기본방향	• 학교별로 등교상황과 자체 여건에 맞는 방역관리 계획 보완 (학생 동선관리, 시차등교, 급식관리 등 방역적 측면과 학사운영 등 고려)
	• 임상증상 학생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학교에서는 최소한 2가지 자료를 확인 후 등교 허용 가능 <참고8> 1. 선별진료소의 검사(진료·방문)결과, 2. 증상에 대한 의사소견(또는 진단)
	• 동거인이 자가격리자인 학생은 기본적으로는 등교 중단이나, 즉시 별도시설에 분리하는 경우와 진단검사 음성결과서(2일 이내) 제출하는 경우는 등교 허용 가능 – 교직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을 준용
	• 검사를 하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등교나 출근을 중단해야 하나, 주기적 선제검사인 경우 예외 적용
	• 수시 '환기' 및 '공동사용 접촉면 소독' 강조
Ⅲ. 코로나19 대응 기본방향	• 학교급식 방역 관리강화 (거리두기단계별 급식운영 세분화, 조리공정별 집중 방역, 개학 전 자체 전수점검 등)
Ⅳ. 감염의심자 발생 시 대응	• 학교의 조치사항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정리
Ⅴ. 확진환자 발생 시 대응	• 확진환자 발생 시 등교중지, 원격수업 등 조치 현실화 (방역당국 역학조사 결과, 전면등교 기조, 백신접종 상황 등 다양한 여건 고려)
Ⅵ. 기숙사 등 시설 관리	• 기숙사에서 의심증상 학생 발생 시 같은 생활실을 사용하는 학생도 관리 범위에 포함
참고 추가 및 삭제	• 시설이용 제한 조치 관련, 내용 중복으로 정리(삭제) • 방역수칙 관련 포스터, 최신 내용으로 현행화 • 경각심 제고 및 재발방지 차원 실제 집단감염 사례의 '원인'과 '시사점' 안내(추가) • 급식, 기숙사 방역 - 체크리스트, 세부관리방안 등 포함 • 학교 방역인력 운영 가이드라인 (활동일지 포함)

관련 내용 문의	1. 기본내용, 급식 : 학생건강정책과 2. 기숙사 방역 : 학교정책과 3. 유치원 방역 : 유아교육정책과 4. 특수학교 방역 : 특수교육정책과

목 차

Ⅰ. 목적 및 기본원칙 ····· 1

1. 목적 ····· 1

2. 기본원칙 ····· 2

Ⅱ. 코로나19 대응 기본방향 ····· 2

1. 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 ····· 2

2. 감염예방을 위한 관리 철저 ····· 4

Ⅲ. 평상시 대응 ····· 9

1. 등교 전 ····· 9

2. 등교 시 ····· 10

3. 등교 후(수업 중) ····· 11

4. 학교급식 운영 ····· 13

Ⅳ. 감염의심자 발생시 대응 ····· 14

Ⅴ. 확진자 발생시 대응 ····· 16

Ⅵ. 기숙사 등 시설 관리 ····· 19

▷ 참 고 ◁

1.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 추진사항 점검항목 ····· 22
2. 학교 발열감시 활동 기준 ····· 23
3. 올바른 체온 측정 방법 ····· 26
4. 학교 소독 강화 방안 ····· 28
5. 학교 내 마스크 착용수칙 ····· 32
6. 냉난방기 등 사용 시 환기 수칙 ····· 35
7. 학생 및 학부모 준수사항(가정통신문(안) 포함) ····· 36
8. 코로나19 임상증상 있는 학생 등교관리 기준 ····· 39
9. 등교수업 이후 학생 심리지원 방안 ····· 40
10. 자가 격리 학생을 위한 마음건강 지침 ····· 41
11. 방역수칙과 함께하는 안전한 학교생활 포스터 ····· 43
12. 코로나19 행동수칙 포스터 ····· 44
13. 코로나19 학교생활 수칙 포스터 ····· 45
14. 유치원 생활방역 수칙 포스터 ····· 46
15. 코로나19 예방 손 씻기 포스터 ····· 47
16.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포스터 ····· 48
17. 실제 감염사례 안내 ····· 50
18. 학교급식 방역관리 세부 관리방안(체크리스트 포함) ····· 51
19. 학교 기숙사 방역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55
20. 학교 기숙사 방역 수칙 포스터 ····· 56
21. 학교 방역인력 운영 가이드라인(활동일지 등 포함) ····· 57

▷ 서 식 ◁

1.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서식 ····· 61
2. 발열검사 결과 발견된 코로나19 의심증상자 관리 서식 ····· 62
3.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출근중지된 교직원 모니터링 서식 ····· 63
4. 방문자 관리 서식 ····· 64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 동향 등에 따라 지속 업데이트 될 수 있음

Ⅰ 목적 및 기본원칙

1 목적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국내 첫 환자가 보고된 후(1.20.), 지역사회 전파가 확인되는 상황으로 위기단계 상향(2.24., 경계→심각)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제타목 '제1급감염병 신종 감염병증후군'에 해당

○ 등교수업 이후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각급 학교*의 학생 및 교직원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피해**를 **최소화**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 코로나19의 특성

- 임상 증상 : 무증상, 경증, 중등증, 중증까지 다양
  - 주요 증상은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등
  - 그 외에 피로, 식욕감소, 가래, 소화기증상(오심,구토,설사 등), 혼돈, 어지러움, 콧물이나 코막힘, 객혈, 흉통, 결막염, 피부 증상 등 다양
- 역학적 특성
  - (잠복기) 1~14일(평균 5~7일)
  - (전파경로) 주된 전파경로는 감염자의 호흡기 침방울(비말)에 의한 전파
    - · 대부분 감염자가 기침, 재채기, 말하기, 노래 등을 할 때 발생한 호흡기 침방울(비말)을 다른 사람이 밀접접촉(주로 2m 이내)하여 발생
    - · 현재까지 연구결과에 의하면 비말 이외, 표면접촉, 공기 등을 통해서도 전파가 가능하나, 공기전파는 의료기관의 에어로졸 생성 시술,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호흡기 비말을 만드는 환경 등 특정 환경에서 제한적으로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짐
  - (바이러스 검출) 증상 발생 1~3일전부터 호흡기 검체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며, 증상 나타나는 시기에 바이러스 양이 많이 감염 초기에 쉽게 전파됨

※ 출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 본 지침에서는 학교 내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학교장 및 교직원의 역할**과 학교 내 발생할 수 있는 **상황 등에 대한 대처방안** 등을 제시함

※ 학생 및 학부모에게 필요한 정보는 요약하여 제시(☞ 참고7)

2 기본원칙

□ **등교 전**(가정), **등교 시, 교육활동 중 코로나19 임상증상**을 **확인**하여 의심증상자 조기 발견, 등교(출근) 중지 등으로 **감염 전파 및 확산 방지**

※ 코로나19 주요 임상증상 :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등

□ 학생 및 교직원 대상 감염병 **예방교육** 강화, **환경 위생관리** 및 **생활 속 거리두기** 등으로 **감염 예방 철저**

※ 수업시작 전·후, 수업 중 수시 환기를 통해 쾌적한 교육활동 공간조성 (단, 실외 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 등 외부환경을 고려하여 환기 횟수 조절)

Ⅱ 코로나19 대응 기본방향

1 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

□ **등교 확대 상황, 학교별 여건 등을 고려한 「학교자체 방역관리 계획*」을 수립·보완하여 상황별 대응 유연화**

* 교내·외 환경, 학교 구성원 역할, 학생 동선관리, 급식관리, 시차등교, 학사운영 등 고려

***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 위한 추진상황 점검항목(요약)** ☞ **참고1 (p.22)**

□ **등교수업 시작 전**

○ 학생간 접촉 최소화하기 위한 학교운영방안 수립 및 교직원 교육(비대면)
※ 대면 교육시 '생활 속 거리유지' 실천이 가능한 인원 단위로 실시

○ 방역물품 준비 및 학교전체 소독 완료

○ 코로나19 의심증상자를 위한 별도 공간(일시적 관찰실) 확보

○ 가정통신 등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등교 중지 기준 및 출결처리 등 안내

□ **등교수업 시작 후**

○ 발열 확인 및 코로나19 임상증상 모니터링

○ 결석 학생에 대한 수업결손 대책 지원

□ 학교 내 '**코로나19 담당자**'를 **복수**로 **지정**하고, **학교장**은 **담당자**와 함께 **감염예방 활동***을 **총괄**

* 대응조직 운영, 학생·교직원 증상 모니터링 및 신고접수, 예방교육, 시설 방역 등

※ 임신부, 기저질환 보유자, 고령자(만65세) 등 고위험군은 담당자에서 제외

※ 기저질환 : 만성폐질환, 당뇨, 만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 만성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 중인 환자 등

□ 학생 및 교직원 등 대상 코로나19 질병정보 및 감염예방수칙 등 행동요령 교육

○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학교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항과 가정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등교수업 시작 전 학부모에게 안내

□ **학교장**(원장 포함. 이하 같음)은 학교 내 코로나19 의심증상자 **발생 상황**을 **관리**

○ 관할 교육(지원)청 및 유관기관* 연락처를 미리 파악하여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상황 발생시 즉시 대응

* 관내 보건소, 인근 선별진료소, 콜센터(☎지역번호+120 또는 ☎1339)

○ 지역 내 확진자 발생, 학생 또는 교직원 확진자 발생 등 **긴급 상황 발생**에 따른 **등교 수업일 조정**은 단위학교(교육지원청) 단독으로 판단하지 않고, **교육부-교육청-학교 및 방역당국과 협의**하여 결정

※ 개별학교 등교 수업일 조정 → 시도교육청이 지역 보건당국(시군구 보건소, 지자체 관련부서)과 협의 결정 → 교육부 보고

※ 지역(시군구) 차원의 등교 수업일 조정 → 교육부 · 교육청 · 보건당국 협의 후 결정

※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교육청·지역보건당국이 협의하여 시작(재개)일 결정

○ 등교수업 시작 전 **가까운 선별진료소**(1~2곳) 및 **진료의뢰 방법**을 미리 **파악**하여 코로나19 임상증상 학생 발견시 선별진료소에 **문의**한 후 **안내**에 따라 **방문 등 조치**

※ 학교에서 코로나19 임상증상 학생을 발견한 경우 보호자에게 우선 연락하고, 유·초의 경우 보호자와 연락이 안되거나 보호자가 희망하는 경우 119 신고 후 구급대 지원을 받아 선별진료소로 이동

2 감염예방을 위한 관리 철저

□ 학생 및 교직원, 기타 방문객 대상 위생수칙 교육·홍보

○ 학생 및 교직원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 수칙,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감염병 예방 교육을 매일 실시

□ **누구나 해야 할 일**

○ 다음의 경우 반드시 비누와 물 또는 손소독제로 손을 씻어야 합니다.

① 운동이나 쉬는 시간 후

② 식사하기 전

③ 등교 하자마자

④ 화장실 이용 후

⑤ 집에 도착하자마자

⑥ 마스크 착용 전·후

○ 만일 기침이나 재채기를 한다면

① 휴지나 옷소매로 가리고

② 사용한 휴지는 바로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에 버린 후

③ 반드시 비누와 물로 30초 이상 깨끗이 손씻기

□ **누구도 하지 말아야 할 일**

①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을 때 등교하는 것

②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는 것

③ 컵, 물병, 접시, 필기도구, 수건 등 공유하거나 음식을 나눠 먹는 것

○ **손씻기, 기침 예절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각종 홍보물**을 학교 내 **주요장소**에 **부착**

※ 관련 홍보물은 교육부 학생건강정보센터 홈페이지(www.schoolhealth.kr) 또는 질병관리청 홈페이지(www.kcdc.go.kr)에 게시된 자료 활용하거나 자체 제작

○ 하교 후 노래방, PC방,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이용) 및 소모임 금지 또는 자제 등에 대한 학생 교육 및 생활지도 철저

□ 학교 구성원 건강관리 강화

○ 기저질환이 있는 **학생 및 교직원**은 **개인위생 준수**(마스크 착용, 손씻기)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교육·안내

※ 장애 등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학생은 장애 특성을 고려한 마스크 착용 방법을 교육 하고, 발열 체크 및 건강상태 확인도 더욱 자주 실시

※ 매점, 청소, 경비 등 학교에 상시 출입하는 외부인의 건강관리는 교직원의 건강관리 기준에 준하여 실시

- 기저질환자는 학교장의 허락을 받아 출석(교직원은 병가) 인정

○ **학교의 장**은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에게 **건강관리 상황**을 **기록**할 수 있는 **기록지***를 **제공**하고 **작성**하도록 하여 **가정 내 관리**를 **강화**

* 가정에서의 체온측정 결과, 증상 종류, 해외여행력 등의 내용을 기록 → 학교에서는 출결처리 증빙자료로 활용 가능

○ **코로나19 임상증상**을 발견한 경우 **출근 및 등교하지 않고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검사를 받도록 학생 및 교직원에게 **적극 안내**

○ **임상증상자**가 **등교(출근)**를 **희망**하는 경우, 학교장은 **1)선별진료소의 검사(진료·방문)결과**와 **2)증상에 대한 의사소견(진단)***을 확인 후 **등교(출근) 허용 가능**

*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연관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됨

※ 임상증상이 반복될 경우, 확인 주기는 학생의 질환명·증상 정도 등을 면밀하게 살펴본 후, 학교장이 판단·결정하여 가정에 안내

○ **등교 시 발열검사를 실시하고 일과 중 추가** 발열검사 실시(최소2회이상)

※ 신체활동(체육수업 등) 또는 식사 후 37.5℃ 이상의 발열이 측정된 경우 10~30분 정도 안정시킨 후 다시 체온 측정

※ 발열검사 외 매 수업 시작 전 질문을 통해 코로나19 임상증상 여부를 확인

*** 학교 발열감시 활동 기준(요약)** ☞ **참고2 (p.23)**

□ **등교 시**

○ 모든 학생 및 교직원 대상 실시(학교 출입 외부인 포함)

○ 교실 입실 전 측정하며, 가급적 실외에서 실시

※ 다만 외기온도, 학교시설여건, 지역 내 확산 정도를 고려, 학교장 판단 하에 발열검사 실시장소 변경 가능

※ 외부온도가 제품사용 설명서의 외부사용가능 온도 범위를 벗어날 경우 실내(건물입구)에서 실시

○ 코로나19 임상증상이 확인되면 보호자 연락 후 선별진료소에 방문 진료·검사 실시(유초의 경우 보호자와 연락이 안되거나 보호자가 희망하는 경우 119 신고하여 구급대 지원을 받아 이동)

□ **등교 후**

○ 점심시간 전 교실에서 추가검사 실시

○ 코로나19 임상증상이 확인되면 별도 공간(일시적 관찰실) 이동, 보호자 연락 후 선별진료소에 방문 진료·검사 실시(유·초의 경우 119 신고하여 구급대 지원을 받아 이동가능)

□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경우는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여 **진료·검사**

※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증상이 있는 동안은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 관찰

◈ (참고) 선별진료소 이동 방법

○ **가정**에서 발견 : 가급적 **자가 차량** 이용

○ **학교**에서 발견 : **보호자 인계 또는 (유·초의 경우 보호자와 연락이 안되거나 보호자가 희망하는 경우) 119신고**하여 구급대의 지원을 받아 이동. 119 신고시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이 발견되어 **선별진료소 이송 원함**"을 **명확히 전달**

□ 다음과 같은 경우 상황에 따라 **등교 또는 출근을 중단**

①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 등교 또는 출근**을 **중단**하고 정해진 기간 동안 **자가격리 준수**

②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은 동거인이 격리 해제될 때까지 **등교 중단**(교직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복무관리 지침」을 준용)

※ 다만 등교를 원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1)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진단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나 2)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허용 가능

③ **학생·교직원** 또는 **동거인**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학생(교직원)**은 **등교(출근)**를 **중단**

※ 다만 선제검사(병원·항공 등 직업특성, 대회참여, 이동검체검사 등)의 경우 적용 제외

○ 학교장은 상기 ①, ②, ③ 조건에 해당하는 학생 또는 교직원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주의**

※ (예시) 학생 : 출석인정 결석처리 / 교원 : 각종 휴가 / 직원 : 재택근무 또는 각종 휴가

※ 관련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보호자 확인, 여행관련 증빙,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 또는 보호자 확인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출결 및 근태관리

○ 학교장은 상기 조건에 해당하는 학생 또는 교직원에 대하여 **전담관리인*** **지정**, 전담관리인은 해당자의 **건강상태**를 매일 **확인**

* (예시) 학생 : 담임교사 또는 부담임교사, 교직원 : 복무담당자

※ '코로나19 담당자'는 전담관리인에서 배제

◈ (참고) 격리면제 대상자

① 비자 타입이 A1(외교), A2(공무), A3(협정)의 경우

② 입국 전 한국대사관에서 '격리면제서' 사전 발급을 받은 경우

③ 항공기 승무원의 경우

④ 객실승무원 외 탑승정비사, 화물정비사(GD지침) 및 부정기편 운항에 필수적인 현지 지점 파견자

⑤ 입국자 중 해수부에서 제공한 격리면제자로 관할 검역소에서 '격리면제서' 발급을 받은 경우

※ 상세내용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 감염 예방을 위한 환경위생 관리

○ 교실 등의 **창문**을 **수시 개방**하여 **충분히 환기**시킴

※ 수업 전, 수업 중 수시로 창문을 개방하여 자연환기 양을 증가시키고, 기상상황,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되 가능한 학교의 모든 출입문 및 창문(화장실 창문 포함) 상시 개방

※ 화장실에 환기용 팬(fan)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화장실 창문을 닫고 팬을 가동

- **냉·난방기(공기청정기 포함)** 사용 시, **수시로 환기 실시**(최소 1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 실시)

※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사용 시 실내공기가 재순환되고 공기의 흐름으로 인해 비말이 더 멀리 확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자주 환기하고 풍향 및 풍량에 주의하여 사용(참고6)

* 미세먼지 고농도시기 및 실내 미세먼지 유지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사용

○ 학교 내 **화장실 등** 세면대에 **손 세정제**와 **종이타월** 등을 충분히 **비치**

※ 종이타월 등 확보가 충분하지 못할 상황을 대비하여 휴대용 휴지 등을 지참할 수 있도록 교육·안내

※ 쓰레기통은 매일 비워 오염물질이 교실 내에 방치되는 것을 방지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옷소매로 입을 가리고 해야 하며 만약 **휴지**를 **사용**했다면 바로 버릴 수 있도록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을 비치

※ 일회용 비닐봉투 등을 비치하여 기침시 활용한 휴지는 밀봉하여 버림

○ 학교 내 공용공간, 통학버스, 기숙사 등 **주요 공간**의 **청소, 소독*** **및 환기 강화**

※ 책상, 탁자, 의자, 전화, 컴퓨터 키보드, 화장실(수도꼭지, 변기, 문고리 등)은 1일 1회 이상 소독하며, 문 손잡이, 난간, 출입문, 엘리베이터, 터치장치, 음수대 등 **공동사용 접촉면**은 **더 자주 소독**

○ **보건용 마스크, 체온계 등** 감염예방을 위한 방역물품 **확보***

* (체온계) 각 교실 1개, 보건실 2개, 통학버스 1개
(보건용 마스크) 학생 1명당 2장(소아용 포함, 공적물량 배정)
(손소독제, 500ml 기준) 각 교실 2개, 보건실 4개, 교무실, 특별실 및 식생활관 1개
(책상 등 소독제, 알콜티슈) 각 교실, 보건실, 교무실, 특별실 및 식생활관 충분량

※ 일반마스크(또는 면마스크)는 학생 1명당 2장 이상 확보(등교수업 시작전 비축)

※ 방역물품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비치 장소는 교실 또는 보건실 등 학교 여건에 맞게 조정

□ **외부인 출입 관리를 위한 전담직원 지정 배치**

○ **외부인**(방문객 등)의 **학교 출입**은 **원칙적**으로 **금지**

- **단, 불가피**한 경우는 **사전에 학교장의 승인**을 받으며, 발열이나 호흡기증상 등 확인 후 **이상 없으면 출입기록을 작성**한 후 **방문 허가**

□ 학교별 학급수 및 학생수 등을 고려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학교 운영**

※ 출결 처리 등 상세 방안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1학년도 등교수업 및 원격수업 가이드라인」 참조

◈ (참고)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 위한 학교 운영(예시)

○ 책상을 매일 수시로 닦기

○ 학교 일과시간 중에는 마스크 상시 착용

※ 마스크 착용 중 이상반응(호흡곤란, 어지러움, 두통 등)이 발생할 경우 마스크를 벗고 증상이 완화되면 마스크를 다시 착용하되, 이상반응이 지속될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연락 후 귀가조치하고 관련분야 의사와 상의하여 적절한 치료법을 찾도록 안내

※ 교사는 수업중 학생과의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하며, 교사와 학생 간 2m 이상 거리유지가 가능한 경우 학교실정에 따라 얼굴전체를 가리는 보호구* 또는 가림막 사용 가능(단, 학생과 보호자가 보호구 사용에 대해 불안해하는 경우 사용 지양)

* 보호구는 「교사용 마스크 착용 세부수칙」 준수

○ 학생 간 최대한 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책상 배치(학급 모둠좌석 배치 금지)

○ 학생 간 접촉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수업시간 및 쉬는 시간 조정

※ 초등학교의 경우는 일괄 쉬는 시간 지양하고 학급 단위로 자율적으로 조정

○ 등·하교 또는 출·퇴근 시간, 휴식시간, 점심시간 교차 실시

○ 비말 또는 접촉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학습활동 제한

○ 식사 시 ①테이블 간 칸막이를 두고 식사하기, ②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등을 준수

○ 실내 휴게실, 다기능 활동 공간 등 다중 이용 공간 일시 이용제한

○ 집단 행사, 소규모 모임, 출장 등 연기 또는 취소

○ 학생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수업자료를 이용하는 교육활동 자제

□ **코로나19 의심증상자 대기**를 위한 **별도**의 **공간** 마련

○ 별도의 공간(일시적 관찰실)은 **1층에 마련이 원칙**

- 단, 교사 형태 및 교실 운영 방식 등 학교실정에 따라 1층 마련이 어려운 경우 **층간 이동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귀가가 가능한 **장소**에 마련

※ 문을 닫을 수 있고 환기가 잘 되는 공간으로 선정하며, 코로나19 의심학생이 재실하여 있는 경우에는 복도 쪽 창문은 닫고, 실외 쪽 창문은 모두 개방

○ 등교 시 발열검사에서 발견된 코로나19 의심증상자가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 별도로 필요한 경우 기상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천막 등 활용방안 고려

Ⅲ 평상시 대응

1 등교 전

○ **(학생 및 교직원) 등교 전** 가정에서 **건강상태**를 **확인**하여 **코로나19 임상증상**을 **인지**한 경우 등교나 출근을 하지 않고 자가진단앱 등을 이용하여 **학교**(담임교사 또는 복무담당자)**에 연락**하고,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검사

※ 선별진료소 방문 전 가급적 콜센터(1339) 또는 관할보건소에 문의하고, 방문 시 반드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중교통은 이용을 자제

-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증상이 있는 동안은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 관찰**

- **증상이 호전**된 경우 담임교사 및 복무 담당자에게 알린 후 **등교**

※ 38℃ 이상 발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선별진료소를 재방문

○ **(학교)** 학교의 장은 상기 사항을 학부모에게 **사전**에 **안내**하고 **일일 점검시스템 가동**

- **등교 전** 코로나19 임상증상을 발견하여 검사를 받은 학생 또는 교직원에 대해 **등교중지 또는 출근정지 처리**하고, **전담 관리인 지정**

❖ **학생**은 **전담관리인**이 등교중지 기간 동안 매일 유선으로 **건강상태 확인**
❖ **교직원**은 출근중지 기간 동안 **스스로** 건강상태를 확인하여 일일 1회 **'전담 관리인'**에게 **보고**토록 안내

2 등교 시

○ (학교) 교실 입실 전 **모든 학생 및 교직원 발열검사*** 실시

※ 통학버스 운전기사, 통학지도 교사, 이용 학생 등은 탑승 전 발열검사 실시

*** 학교 발열감시 활동 기준 "등교시"(요약) ☞ 참고2 (p.23)**

○ 모든 학생 및 교직원 대상 실시(학교 출입 외부인 포함)

○ 발열측정 전 학생 간 일정 거리* 유지를 위해 등교시간, 출입동선 등 지정

* 두 팔을 뻗어 서로 닿지 않을 정도의 거리

○ 교실 입실 전 측정하며, 가급적 실외에서 실시

※ 다만 외기온도, 학교시설여건, 지역 내 확산 정도를 고려, 학교장 판단 하에 발열검사 실시장소 변경 가능

※ 외부온도가 제품사용 설명서의 외부사용가능 온도 범위를 벗어날 경우 실내(교사 입구)에서 실시

○ 비접촉식 체온계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1차 결과 37.5℃ 이상 발열이 확인된 경우 일정시간 동안 안정을 취하게 한 후 고막체온계 사용 재측정

※ 비접촉식 체온계가 없는 경우 고막체온계 사용

○ 37.5℃ 이상 발열 확인되면 추가 코로나19 임상증상을 확인하고 보호자에게 연락

○ 유·초의 경우 보호자 연락이 안되거나, 보호자가 희망하는 경우 119 신고하여 구급대 지원을 받아 선별진료소로 이동

○ 전담관리인을 지정하여 검사결과 및 건강상태 확인

- **37.5℃ 이상** 발열 확인되면 **추가 코로나19 임상증상을 확인**하고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검사**받도록 **안내**
- 유·초의 경우 보호자 연락이 안되거나, 보호자가 희망하는 경우 **119 신고**하여 구급대 지원을 받아 **선별진료소로 이동**

※ 유아 및 초등학생의 경우 교직원 등이 보건용 마스크 착용 후 보호자 또는 119구급대 도착시까지 별도 장소에서 적정거리 유지 후 동석

- **전담관리인 지정**하여 **검사결과** 및 **건강상태 관리**

❖ **학생**은 **전담관리인**이 등교중지 기간 동안 매일 유선으로 **건강상태 확인**

❖ **교직원**은 출근중지 기간 동안 **스스로** 건강상태를 확인하여 일일 1회 **'전담관리인'**에게 **보고**토록 안내

3 등교 후(수업 중)

○ **(학생 및 교직원)** 교육활동에 따른 **교실이동**, 쉬는 시간 중 **화장실 이용, 급식 이용** 및 **음용수 섭취** 등을 제외하고는 교실 간 이동 및 불필요한 움직임 자제

○ **(담임교사 또는 교과교사) 점심시간**(급식실 이동 전) **추가 발열검사** 실시 및 **코로나19 임상증상을 확인**하는 등 **학생 건강상태**를 **관찰**

※ 학교급별·학년별 수업시간, 열화상카메라 보유여부 등을 고려하여 추가 발열검사 시간 및 장소 조정 가능하나 가급적 학생들이 급식실에 들어가기 전 검사 완료

※ 교실배식 학교는 점심식사 전 교실에서 추가발열검사 실시 및 코로나19 임상증상 확인

※ 학교장 재량에 따라 수업 중 추가검사 실시 및 수업시간 조정 가능

*** 학교 발열감시 활동 기준 "수업 중"(요약) ☞ 참고2 (p.23)**

○ 점심식사를 위해 급식실 이동 전 추가 발열검사 실시
○ 비접촉 체온계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1차 결과 37.5℃ 이상 발열이 확인된 경우 안정을 취하게 한 후 재측정
○ 37.5℃ 이상 발열 확인되면 별도공간(일시적 관찰실)으로 이동
○ 추가 증상 확인 후 보호자에게 연락
○ 유·초의 경우 보호자 연락이 안되거나, 보호자가 희망하는 경우 119 신고하여 구급대 지원을 받아 선별진료소로 이동
○ 전담관리인을 지정하여 검사결과 및 건강상태 확인

○ **발열검사** 또는 **교육활동 중 코로나19 임상증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시킨 후 일시적 관찰실로 **이동하여 추가 코로나19 임상증상 확인**

○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학생 상태를 설명하고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검사**받도록 **안내**

- 유·초의 경우 보호자 연락이 안되거나, 보호자가 희망하는 경우 **119 신고**하여 구급대 지원을 받아 **선별진료소로 이동**

※ 유아 및 초등학생의 경우 교직원 등이 보건용 마스크 착용 후 119구급대 도착시까지 동석, 적정거리 유지

○ **(전담 관리인)** 담당 학생 또는 교직원에 대한 **검사결과** 및 **건강상태 관리**

❖ **학생**은 **전담관리인**이 등교중지 기간 동안 매일 유선으로 **건강상태 확인**

❖ **교직원**은 출근중지 기간 동안 **스스로** 건강상태를 확인하여 일일 1회 **'전담관리인'**에게 **보고**토록 안내

4 학교급식 운영

□ **거리두기 단계별 급식방법**에 따른 **운영**과 **조리공정별 집중 방역, 개학 전 자체 전수점검** 추진 등 학교급식 방역 **관리강화**(참고 18 참조)

○ **(급식방법)** 칸막이 설치 확대, 좌석조정(지정좌석제 운영, 띄어앉기 등), 시차배식 등 **식사환경 개선*** 및 **식단조정**** 등으로 거리두기 강화

* 급식실 내 **개인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밀집도 개선을 위해 **교실 배식 전환·병행 검토**(반별 배식 기구 및 운반 인력 추가 등 사전 준비 필요)

** **전면등교 적응기(2주)** 및 **거리두기 3단계** 시, 조리·배식·식사시간 단축을 통한 **접촉 최소화**를 위해 **대체식·간편식 등 식단 간소화**하여 제공 가능

≪ 거리두기 단계별 급식 방법(안) ≫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단계조정 기준(확진자)			500명 미만	500명 이상	1,000명 이상	2,000명 이상
급식방법	식사환경	칸막이 有	모든 자리에 착석 또는 한 칸 띄어 앉기		식탁 **칸막이** 설치하고 **한 칸** 띄어 앉기	원격수업 전환 (급식중단)
		칸막이 無	거리두기(1m 이상) 유지 또는 한 칸 띄어 앉기			
	제공식단		일반식 ※ 전면등교 적응기(2주) 간편식 등 식단 조정 (음식의 온도·시간 관리가 어려운 경우)		**단계적 급식** (간편식 등 식단 조정)	

※ 동 거리두기 단계별 급식방법은 지역 및 학교 방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용 가능, 필요 시 수업시간의 탄력적 조정 등으로 급식시간 추가 확보 가능

○ **(집중방역) 소독·환기*** 강화 및 급식 전 과정에 대한 **공정별 위해요소 관리, 방역인력을 활용**한(또는 추가배치) 소독·환기·배식 등 적극 지원

* 급식 개시 이전 특별소독, 접촉 빈번한 시설·기구 매일 청소·소독, 수시 환기

- **(식사지도)** 식사 전 **손 소독**, 배식 대기 시 **적정 간격 유지**, 배식 및 식사 중 **대화 삼가, 지정된 장소**에서 **식사**토록 (담임)교사, 방역인력 등이 현장지도

※ 급식 후 수업시작 전까지 학생들이 생활 속 거리두기를 준수하도록 생활지도 철저

- **(급식종사자 건강관리) 건강상태 매일 확인***, 올바른 **손 씻기 및 소독** 철저, 배식 시 **위생장갑** 사용, **위생 복장 및 마스크 착용 등 실시**

* 매일 2회(출근 직후, 배식 전) 급식종사자의 건강상태 확인,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급식종사자 발견 시 학교장에게 즉시 보고 후 귀가 조치 및 코로나19 행동수칙 안내

※ 출근중단에 따른 급식업무 공백 시 대체인력 활용 또는 비상시 급식운영 대책에 준하여 운영

○ **(전수점검) 모든 학교**에서 2학기 **개학 전 학교별 자체 점검** 실시

※ 점검내용: 급식 방역관리 계획 수립, 식사 환경 조성 및 방역 준수사항 등(참고18. 점검표 참조)

Ⅳ 감염의심자 발생시 대응

○ **(학교) 학생·교직원**이 코로나19 임상증상이 확인되어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 **즉시 관할 교육청**에 **보고**

- 격리(등교중지) 중인 학생이 발생한 경우 해당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대체학습 제공 방법과 학교 복귀 후 **학습 결손**을 **보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 강구**

◈ **(참고) 코로나19 사례정의**

○ **확진환자** : 임상양상과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의사환자** :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사람

○ **조사대상 유증상자**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사람

②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사람

③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진단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상세내용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지자체용) 참조

○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내용**

① **검사 중**인 경우 **해당 학생·교직원**에 대해 검사결과 확인시까지 **등교** 또는 **출근 중지 조치**하고 **학교는 정상 운영 가능**

② **검사결과 양성**(확진환자)인 경우

- 해당 학생·교직원은 보건당국에서 **격리해제 할 때까지 등교** 또는 **출근 중지 조치**

※ 보건당국에서 격리 해제한 경우 학교 복귀 가능

③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 **자가격리 대상자**인 경우 통지받은 자가격리 기간 동안 **등교·출근 중지** 조치

- 검사결과는 **음성**이나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도록 하되, 대상자가 **등교(출근)**를 **희망**하는 경우 **두 가지 내용***을 확인 후 **등교(출근) 허용 가능**

  * 선별진료소의 검사(진료·방문)결과와 증상에 대한 의사소견(진단)

④ 선별진료소의 결정에 따라 **진단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를 관찰 후 호전되면 등교·출근**

○ **(교육청) 관내 인접 학교**(의심자의 가족이 재학 또는 근무 중인 학교 포함) 내 **확진환자 발생여부 파악** 및 감염병 예방 **계기교육 강화**

※ 인접학교는 지리적 거리, 통학로 중첩성 등에 따른 감염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교육청에서 지역 보건당국과 협의하여 판단

V 확진환자 발생시 대응

< 확진환자 발생시 보건당국 조치사항 >

① 확진환자의 감염경로 이동동선 및 접촉자 확인 등 위한 역학조사 실시

② 확진환자 이용시설 방역조치(일시적 시설이용 제한, 소독 등) 명령 등 실시

○ **(학교) 지역보건당국 및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귀가조치 범위·시간 등을 결정·조치**하고, 역학조사 결과(2~3일 소요)를 토대로 **수업 방식**(원격수업, 단축수업 등)을 **결정***하여 학생·학부모 **안내**

* <고려 및 판단요소(예시)> 지역 또는 인접학교 확진자 발생 상황, 학생 동선(학급, 학년, 동일 층, 동일 건물, 급식실 이용, 이동수업 등), 학사 일정·등교 학생 밀집도 등 방역적 측면과 원격수업 장기화로 인한 학습 격차·돌봄 문제 등 종합 고려하되 가급적 최소화

- **확진환자**는 보건당국 **격리해제 할 때까지 등교 또는 출근 중지**

- **확진환자**와 **접촉**한 **학생 및 교직원**은 보건당국의 격리통지에 따라 자가격리(등교·출근 중지)

※ 확진환자 접촉자가 확진검사를 시행하여 '음성'으로 확인되더라도, 기존 자가격리 및 능동감시는 지속

◈ (참고) 확진환자 접촉자 조사 참고 사항

○ 증상발생 2일 전부터 접촉자 범위 설정

※ 무증상자의 경우 검체 채취일 기준 2일전부터 접촉자 범위 설정

○ 접촉자 범위는 시·도 즉각대응팀이 확진환자의 증상 및 마스크 착용 여부, 체류기간, 노출상황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출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지자체용)

- **전담관리인**은 해당 학생 또는 교직원에 대한 상태(건강상태, 확진검사 유무 및 결과 등) 관리

- 확진환자의 **이동 동선**에 따른 **일시적 시설이용 제한 조치***

※ 인접학교는 지리적 거리, 통학로 중첩성 등에 따른 감염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교육청에서 지역 보건당국과 협의하여 판단

*** 학교 내 확진환자 발생시 시설이용 제한 조치**

○ 학교장은 보건당국의 안내에 따라 시설의 일시적 이용제한 및 출입금지, 시설 내 이동제한 등 조치 시행

○ 시설 이용제한 기간은 소독 및 환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으로 정하여 시설이용 중단을 최소화

○ 시설 이용제한 등의 구체적 범위는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

< 시설 이용제한 등의 범위(예시) >

발생규모	이동 경로		시설 이용제한 범위(예시)
1명 발생 (방문포함)	▪ 이동 경로 명확	⇨	▪ **해당 교실 또는 교무실** 및 **이동 경로 중심 이용제한**
	▪ 이동 경로 불명확		▪ **확진환자의 이용 예상 구역**(교실, 교무실, 화장실, 복도, 식당, 승강기 등)과 **일반인의 이용·접촉이 잦은 구역** 중심으로 이용제한
복수 발생 (방문포함)	▪ 이동 경로 명확	⇨	▪ **같은 층**에서 **복수의 확진환자** 발생 시, **해당 층 전부 이용제한** ※ 층간 이동통제가 시행되는 경우 해당 층 중점 방역 ▪ **다수**의 **층**에서 **복수**의 **확진환자** 발생 시, **해당 건물 전체** 일시적 이용제한 검토
	▪ 이동 경로 불명확	⇨	▪ **학교 전체** 일시적 이용제한

- **일시적 이용제한 시설**에 대한 **소독** 방법 등 결정·시행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참조

- **시설 이용제한 종료 후** 학생 및 교직원 대상 감염병 예방 **계기 교육 실시**

○ (학생 및 교직원) 학교장은 일시적 이용제한 및 출입금지 등 조치를 한 경우 모든 학생 및 교직원은 해당 기간 동안 집에 머물며 **외출 자제** 안내

- 가정에서 **코로나19 임상증상** 발현 여부를 **매일 확인**하고, **증상 확인시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검사

○ **(교육청)** 관할 보건소 연계 통해 **해당 학교에서 추진할 조치사항을 지원*하고, 추가 환자 발생 모니터링**

* 학교의 일시적 이용제한 및 출입금지, 소독 등 방역조치 등

- 확진환자 재학 학교의 **인접 학교***(확진환자의 가족이 재학 또는 근무 중인 학교 포함) **소독 강화** 및 **발생상황 모니터링**

* 인접학교는 지리적 거리, 통학로 중첩성 등에 따른 감염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교육청에서 지역 보건당국과 협의하여 판단

- 확진환자 발생학교와 협의하여 **학생 등 심리지원**(SNS 활용 가능)

*** 자가 격리 학생을 위한 마음건강 지침(요약)** ☞ **참고10 (p.41)**

자가 격리 중인 아이들에게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 주세요.

○ 격리된 상황을 수용하고 회복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을 갖도록 지지
○ 아이가 자신의 잘못으로 격리되었다고 생각하지 않게 상황 설명
○ 고립감을 느끼지 않게 친구, 선생님과 지속적으로 소통
○ 격리 기간 동안 건강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도록 지도
○ 격리가 끝난 후 등교 시 따뜻하게 환영, 학교 적응 지원

- 등교중지, 시설 이용제한 등으로 인한 **수업 결손 등에 대한 대책**(원격 수업 등) **지원**

- 맞벌이가정 돌봄·저소득가정 자녀 급식지원 대책 강구

◈ (참고) 코로나19 사례정의

○ **확진환자** : 임상양상과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의사환자** :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사람

○ **조사대상 유증상자**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사람

②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사람

③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진단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상세내용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지자체용) 참조

Ⅵ 기숙사 방역 관리

□ 입사 전 관리

○ **1일 통학 가능 거리**에 거주하는 학생은 가급적 **기숙사 이용 자제**

※ 해당 학생의 통학시간, 통학시 교통수단 등을 고려하여 보호자와 협의 후 결정

- 가능한 **1인 1실**을 사용하며, 불가피하게 **다인실**을 운영할 경우 **거리유지**가 **충분히** 되도록 **인원 배정**

※ 정원 초과인원 수용 금지 등 철저 관리

○ **기숙사 입사 전** 모든 학생에 대한 **건강상태**(코로나19 임상증상* 발현 여부 확인, 결핵검진 등)를 확인

* 코로나19 주요 임상증상 : 발열(37.5 ℃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등

□ 기숙사 시설 및 환경 관리

○ **방역 관리자**를 **지정**하고, 기숙사생 **관리 방안 수립** 및 운영

○ **출입구**를 가급적 **단일화**하고, 출입 시 상시 발열체크 실시

○ 기숙사 내 **공용공간***은 **가급적 폐쇄**하되, **부득이하게 개방**할 경우 **칸막이 설치, 충분한 거리 확보**(좌석 띄우기 등) 등 **사전 조치**

* 독서실, 면학실, 정보검색실, 휴게공간, 식사공간 등

○ 코로나19 질병정보 및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감염예방 행동 수칙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홍보물**을 시설 내 주요 장소에 **부착**

○ 기숙사 내 화장실 개수대에 손 세정제 및 손소독제, 휴지, 종이타월 등을 충분히 비치

※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을 곳곳(생활실, 복도, 공용공간 등)에 비치하고, 오염물질이 기숙사 내 방치되지 않도록 쓰레기통은 매일 비우기

○ 시설 내 주요 공간의 **청소, 소독 및 환기 강화**

- 사람의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고, 수시로 환기를 실시하여 공기를 정화

  * 문 손잡이, 난간, 다양한 터치 장치, 책상, 탁자, 의자, 전화, 컴퓨터 키보드는 하루에 한번 이상 소독하며, 출입문이나 엘리베이터 등은 더 자주 소독

□ **입사생 및 방문객 출입·이동 등 관리**

○ **기숙사 입사생**은 **매일 2회*** **발열검사 추가 실시**

  * ①기상 후 아침식사 전, ②수업 종료 후 기숙사 입실 전

- 기숙사 출입, 공용공간 이용 등을 위한 이동을 제외하고 **동 간, 층 간, 호실 간 이동 제한**
- 취침공간 외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하고 **집단간식 섭취 금지**
- 학교 밖 외출이나 귀가 후 **복귀 학생**에 대해서는 **기숙사 방역 관리자**가 기숙사 입실 전 **방문지 확인, 발열체크 등을 실시**하고 **증상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

○ **외부인**(보호자, 방문자, 음식배달원 등)의 **출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가급적 **제한**

□ **코로나19 의심증상자 발생 시 조치**

○ **증상**이 있는 학생이 확인된 경우, **해당학생** 및 **같은 생활실을 사용하는 학생**은 **즉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시키고 **해당 생활실에서 증상**을 **재확인**

- 해당학생, 같은 생활실을 사용하는 학생의 **보호자**에게 **연락**하고 **진단검사 실시**

○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한 **학생**은 **보건용 마스크 착용** 후 **기숙사 등 대기 조치**(가급적 1인실 사용), **그 밖의 기숙사 이용학생**은 검사 결과 확인 전까지 **정상**적으로 **수업참여**

- **검사결과 음성**으로 확인되었으나, **증상이 있는 경우**는 **가급적 귀가 조치**하여 증상이 호전되면 기숙사로 복귀시키되, **불가피한 사유**로 귀가조치가 불가한 경우 **1인실 사용**
- **검사결과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 **대상학생** 및 **밀접접촉자**는 **보건당국** 안내에 따라 **조치**

※ 확진환자 이용장소(공간)는 방역조치(일시적 이용제한, 소독 등) 실시

□ 기타 안내사항

○ 거리두기 체제 및 일반학교 밀집도 기준과 연계한 전국단위 모집학교 등 기숙사 학교 밀집도 기준 조정

≪ 거리두기 4단계 체제에 따른 학교밀집도 기준 ('21.2학기~) ≫

<table>
<tr><th>단계</th><th>1단계</th><th>2단계</th><th>3단계</th><th>4단계</th></tr>
<tr><td>일반학교
밀집도 기준</td><td rowspan="2">전면 등교</td><td rowspan="2">전면 등교 가능
(지역별 여건에 따라 "중·고 밀집도 2/3, 초3~6학년은 3/4" 이상 가능)</td><td>초등3~6 3/4 이내
중학 1/3 ~ 2/3
고교 2/3</td><td rowspan="2">원격수업 전환</td></tr>
<tr><td>전국단위 모집학교 등 기숙사 학교 밀집도 기준</td><td>①전교생 기숙사 생활, ②기숙사 입소 전 진단검사 실시, ③외출 및 외부인 접촉 없이(교사 등 학교 관계자 제외), ④방역 수칙의 철저한 준수 전제 하, 밀집도 예외 적용하여 전면등교 가능</td></tr>
</table>

※ 예외 시에도, 교실, 구내식당 등에서 거리두기가 충분히 유지되도록 밀집도를 낮추는 방안(분반 등) 필요

○ 시·도교육청별 여건을 고려한 학교기숙사 운영 방안 보완 및 시행

참고1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 추진사항 점검항목

시기	추진 · 점검 사항
개학 전 또는 등교수업 시작 전	▪ 학교 관리조직 구성 등 코로나19 비상 운영계획 수립·보완
	▪ 모든 교직원 대상 코로나19 대응요령 교육
	▪ 보건소, 선별진료소 등과 비상연락체계 구축
	▪ 자가진단앱 등 활용하여 학생·교직원 건강상태 사전 진단
	▪ 코로나19 의심증상자를 위한 별도 공간(일시적 관찰실) 준비
	▪ 등교시간 혼잡 최소화 방안 마련
	▪ 위생 방역물품(비누 · 손소독제 · 체온계 등) 비치
	▪ 안전한 급식 제공 방안 수립
	▪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비축·점검
	▪ 학교 전체 시설, 공간에 대한 소독
	▪ 학생 간 거리 유지 위한 책상 배치
	▪ 코로나 행동 수칙 교내 게시
등교수업 시작 후 (계속)	▪ 모든 학교 출입자 발열검사 및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 마스크, 손소독제 등 소모 시 충당
	▪ 접촉이 빈번한 시설·기구 청소 및 소독
	▪ 학생 및 교직원 결석현황 일일 모니터링
	▪ 지역사회 코로나19 발생상황 모니터링
	▪ 학생 및 교직원에게 건강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
	▪ 기 수립한 코로나19 비상 운영계획 보완(필요시)

참고2 학교 발열감시 활동 기준

≪ 등교시 ≫

○ **실시대상 : 모든 학생 및 교직원**(학교에 출입하는 외부인 포함)

○ **실시장소 : 교실 입실 전**, 가급적 실외에서 실시

※ 다만 외기온도, 학교시설여건, 지역 내 확산 정도를 고려, 학교장 판단 하에 발열검사 실시장소 변경 가능

i) 출입문이 다수인 학교는 발열검사를 실시하는 출입문으로 등교하도록 출입 동선 지정

※ 단, 열화상카메라를 사용하는 학교는 카메라가 설치된 출입문을 이용하여 등교하도록 조치

※ 체온계의 제품설명서를 참조하여 실외 온도가 외부사용가능 온도를 벗어나는 경우 발열검사 실시 장소를 교사(校舍) 입구로 이동

ii) 학년별(또는 학급별) 등교시간을 조정하여 발열검사를 받기 위해 많은 학생들이 모이는 것을 방지하고,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지도

※ 통학버스 운행 학교는 통학버스 내 손소독제, 체온계 비치, 탑승 전 발열검사 실시하여 발열여부 확인, 가급적 지정좌석제 운영, 출발 전·후 소독 및 수시 환기

○ **실시방법**

i) 요일별(또는 일자별) 발열검사 담당 교직원 지정 등 발열검사 계획을 수립하고 체온계 사용방법 사전 교육 실시

ii) 발열검사는 1차 체온 측정 결과 37.5℃ 이상 발열이 확인된 경우 안정을 취한 후 고막체온계를 사용하여 재측정

※ 고막체온계를 사용하는 경우 렌즈필터를 주기적으로 교체하거나 알코올 등으로 소독하여 사용

※ 1차 체온 측정은 열화상카메라를 이용한 발열 스크리닝으로 대체 가능

iii) 발열검사시 발열 외 코로나19 임상증상 여부를 함께 확인

※ 코로나19 주요 임상증상 : 발열(37.5 ℃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등

iv) 재측정 결과 반복하여 37.5℃이상 발열이 확인되었거나, 발열 외 코로나19 임상증상이 확인되면 마스크를 착용시킨 후 교직원은 바로 선별진료소 방문 조치, 학생은 보호자에게 연락

v) 보호자와 연락이 안되거나 보호자가 희망하는 경우 119 신고 후 구급대 지원을 받아 선별진료소로 이동

○ **실시자 주의사항**

i) 발열검사 실시자는 반드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

ii) 기저질환자 또는 임신부는 발열검사 실시자에서 제외

※ (예시) 비접촉식 체온계 이용시 학생이동 동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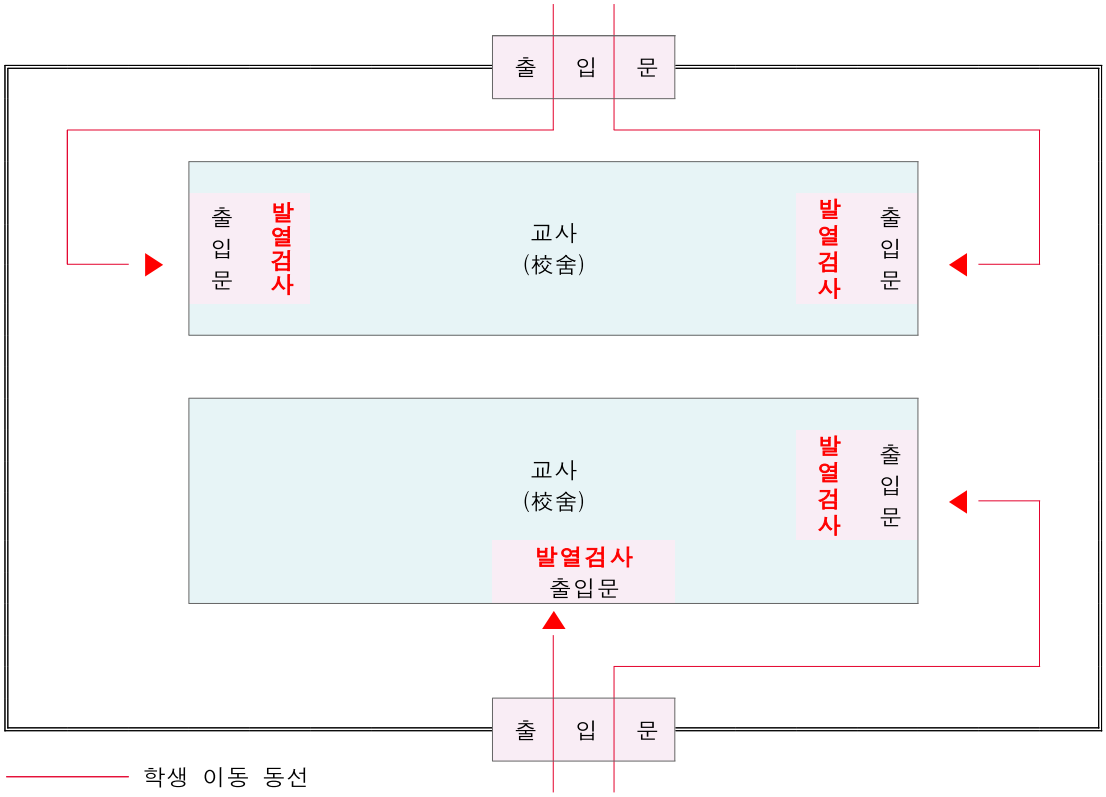

※ (예시) 열화상카메라 이용시 학생이동 동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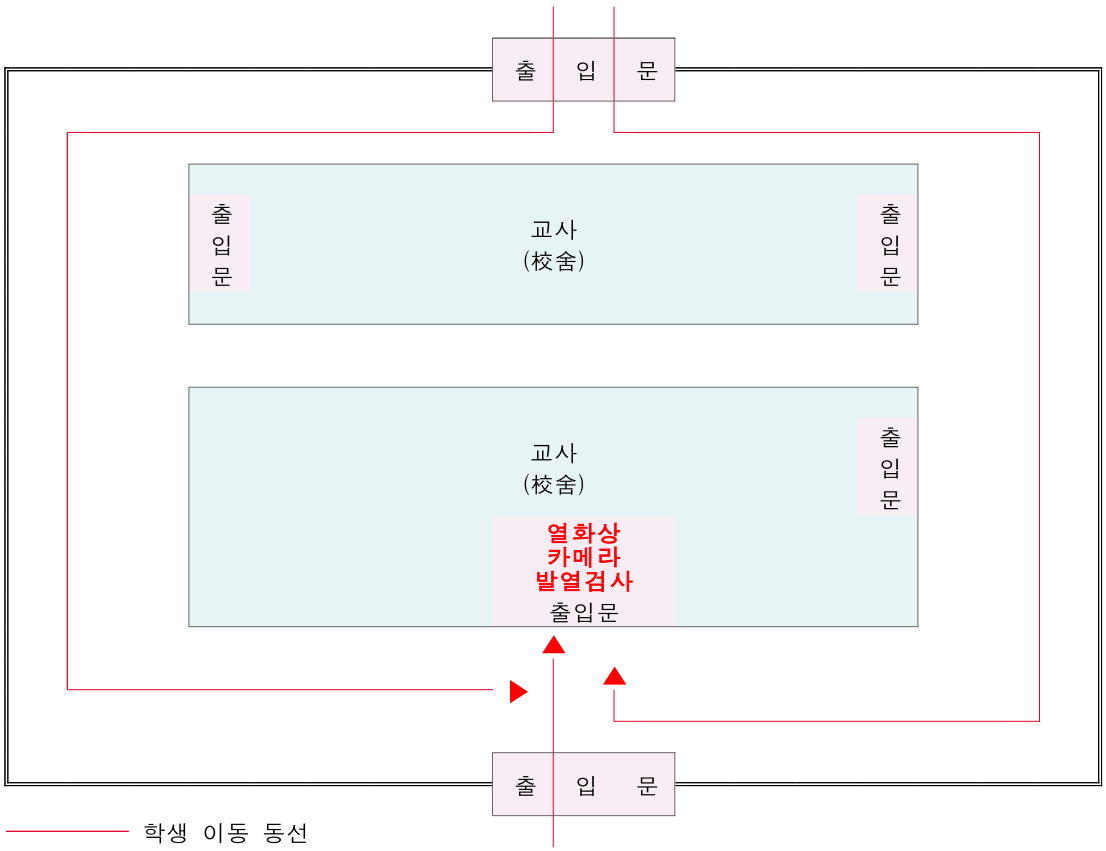

≪ 등교 후(수업 중) ≫

○ **실시대상 : 모든 학생 및 교직원**

○ **실시장소 : 교실**(또는 교무실, 행정실 등)

○ **실시방법**

i) **담임교사 또는 교과교사**는 점심시간 직전 수업 종료 후 **급식실 이동 전** 각 교실에서 발열검사 실시

※ 학교급별·학년별 수업시간, 열화상카메라 보유여부 등을 고려하여 추가 발열검사 시간 및 장소 조정 가능하나 가급적 학생들이 급식실에 들어가기 전 검사 완료

※ 교실배식 학교는 점심식사 전 교실에서 추가발열검사 실시

ii) 1차 체온 측정 결과 37.5℃ 이상 발열이 확인된 경우 재측정

※ 재측정하는 경우에는 고막체온계를 사용하는 경우 렌즈필터를 알코올 등으로 소독하여 사용

iii) 발열검사시 발열 외 코로나19 임상증상 여부를 함께 확인

※ 코로나19 주요 임상증상 : 발열(37.5 ℃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

iv) 재측정 결과 반복하여 37.5℃이상 발열이 확인되었거나, 발열 외 코로나19 임상증상이 확인되면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시킨 후 별도 공간(일시적 관찰실)로 이동

v) 교직원은 바로 선별진료소 방문 조치, 학생은 보호자에게 연락

vi) 유·초의 경우 보호자와 연락이 안되거나 보호자가 희망하는 경우 119 신고 후 구급대 지원을 받아 선별진료소로 이동

○ **실시자 주의사항**

i) 담임교사 또는 교과교사가 기저질환자 또는 임신부인 경우 대체자 지정

참고3 올바른 체온 측정 방법

□ 체온을 측정하는 시기

○ 운동 및 샤워 후, 먹고 마신 후나 실내외의 온도차이가 크게 나는 경우 등에는 신체가 안정되도록 30분 정도 경과한 후 측정합니다.

□ 체온을 측정하는 방법

○ 귓속형(고막) 체온계 사용 주의사항

- 정확한 온도 측정은 귀를 뒤로 당겨 일직선이 되도록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 측정용 필터가 일회용인 경우 반드시 측정 대상자마다 새로운 필터로 교환 사용하거나 알콜솜으로 깨끗이 닦은 후 사용해야 합니다.
  ※ 타인이 사용한 필터를 사용하면 중이염 등 감염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
- 수영이나 목욕 등으로 귀가 젖었을 때는 귀에 상처를 입을 수 있으므로 귓속형 적외선 체온계를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 귀지가 많거나 외이도가 작은 경우, 귀 감염이 있는 경우 등은 온도의 정확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아동이 몸부림을 칠 경우 피부와 센서간의 거리가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아 측정오류가 생길 수 있으므로 진정시킨 후 측정합니다.

○ **비접촉식 체온계 사용 주의사항**

- 센서를 이마 중앙에 오도록 해야 하고 기기를 2~3cm 떨어뜨려야 정확한 수치가 나옵니다.
- 이마에 땀이 나면 오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땀을 닦고 측정합니다.

□ 기타사항

○ 건강한 성인과 어린이의 정상 체온은 36.1℃ ~ 37.2℃이며 평균 정상 체온은 37.0℃입니다.

○ 신진 대사율이 높은 아이들의 체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 배란중인 여성의 경우 호르몬 변화로 체온이 0.5℃ 높아질 수 있습니다.
- 65세 이상 성인은 대사율이 낮아 체온이 0.3℃ 더 낮을 수 있습니다.

○ 계절이나 하루 중 시간대에 따라 체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체온은 잠을 자는 오전 3시에 가장 낮고 바쁜 하루를 보낸 후 오후 6시에 가장 높습니다.
- 정확한 판독을 위해 매일 같은 시간에 온도를 측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4 학교 소독 강화 방안

※ 시설 소독은 방대본·중수본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 시설 소독안내 지침을 따르며, 본 내용은 학교에 필요한 내용을 발췌·안내한 것이므로, 본 지침에 없는 사항은 방역당국의 지침을 준용

<소독의 종류 및 적용범위 등>

구분		적용 범위	시행주체
정기 소독		관계법령*에 따른 학교 전체 소독 * 「감염병예방법」 제51조 및 시행규칙 제36조	전문 소독업체 위탁
일상 소독		학기 중 취약 시설 관리를 위한 소독	학교 자체 소독
임시 소독	행사 개최시 (시설임대 포함)	다수가 이용한 학교 시설에 대한 소독	전문 소독업체 위탁
	확진자 발생시	확진자에 노출된 공간에 대한 소독	

※ 소독 전제 과정 중 환기를 충분히 시키고, 공기 중에 소독제를 분무하지 않으며, 환경부 승인·신고 소독제를 천에 적셔서 닦는 방법으로 소독하도록 조치

□ 정기소독

○ **(실시 시기 및 주기)** 가급적 **등교수업 이전**에 **학교 전체**에 대한 **소독 완료** 하고, 이후 실시하는 정기소독은 **관련 법령***에 정해진 시기에 준하여 실시

*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36조제4항) 4월~9월은 2개월에 1회 이상, 10월~3월은 3개월에 1회 이상 소독

○ **(실시방법) 전문 소독업체** 위탁 시행

※ 상황 종료 이전 정기소독을 실시할 경우에는 전문 소독업체 선정시 코로나바이러스 소독 가능 제품을 사용하도록 요청

□ 일상 소독

○ **청소·소독 전 과정 중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어 두기**

○ 청소 및 소독 작업을 수행하는 직원은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

* 일회용 장갑, 보건용 마스크 착용하고 필요시 일회용 방수용 긴팔 가운 또는 방수 앞치마,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 소독전에는 세제(또는 비누)와 물을 사용하여 자주 사용하는 부위를 닦음

- 사람들이 **자주 접촉하는 시설·기구 등**의 표면을 소독

◈ **소독 부위 예시** (1) 손잡이, 난간, 문고리, 팔걸이, 에어컨 콘센트, 스위치, 엘리베이터 버튼 등 사람들의 접촉이 많은 물건 표면 (2) 사무실에서 자주 접촉하는 표면 (예 :키보드, 책상, 의자, 전화 등) (3) 화장실 : 수도꼭지, 화장실 문 손잡이, 변기 덮개 및 욕조 및 화장실 표면

- (방법) **소독제로 천**(헝겊 등) **등**을 적신 후 **손길이 닿는 벽면과 자주 사용하는 모든 부위**를 닦고 **일정시간* 이상 유지** 후, 깨끗한 물로 적신 천(헝겊 등)으로 표면을 닦음

  * 소독제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예를 들어 차아염소산나트륨 1000ppm 희석액 사용시 1분 이상 유지

  ※ 환경부 승인된 소독제를 사용하나 차아 염소산 나트륨을 사용할 수 있으며 반드시 소독제 종류별 특성 및 시설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사용(차아염소산 나트륨사용시 변색 등이 생기는 표면은 알콜(70% 이상)을 사용)

- (횟수) **하루에 한 번 이상 소독,** 다만, 소독제를 과도하게 사용하여 인체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함

  * 차아염소산나트륨은 피부 조직을 손상시키거나 습진 등 유발하며 두통을 유발하는 불쾌한 냄새 등으로 사용 시에는 반드시 환풍기 사용과 함께 창문을 개방해서 사용

○ 각 건물의 **출입문 및 엘리베이터 등**은 더 자주 청소 및 소독

- **손잡이와 엘리베이터 버튼**을 닦아야 함(예: 차아염소산나트륨희석액 1000ppm)

  ※ 1000 ppm = 물 1000ml + 차아염소산나트륨(5%) 20ml

  ※ 소독제를 분사하는 소독방법은 적용범위가 불확실하고 에어로졸 생성을 촉진할 수 있으므로 표면 소독에 적용 자제

○ **화장실은** 소독제(예: 차아염소산나트륨 1,000ppm 희석액)를 사용하여 변기를 포함하여 손길이 닿는 화장실 표면을 소독제로 닦음

  ※ 변기에 뚜겅이 있는 경우 변기 물을 내릴때 에어로졸이나 물방울이 튀지 않도록 변기 뚜껑을 덮고 사용하고 변기 내부를 청소한 솔은 변기외부 소독에 중복 사용하지 말 것

○ 시설 관리자는 청소·소독 담당자에게 청소, 소독 및 개인보호 용품(소독제, 종이타월 및 마스크 등)을 충분히 제공

◈ 소독제 주요 성분별 유효농도·접촉시간·적용대상

분류	대표 유효성분	유효농도	표면 접촉 시간	적용대상
염소계 화합물	차아염소산나트륨 (일명 가정용 락스)	0.05% (500 ppm)	5분 이상 (ECDC 최고)	일상 표면소독
		0.1% (1,000 ppm)	1분 이상 (WHO 최고)	일상 화장실 소독 환자이용공간 표면 및 화장실 소독
		0.5% (5,000 ppm)		환자 혈액 및 체액 소독
알코올	에탄올	70% – 90%	1분	일상 및 환자이용공간 표면소독
	이소프로판올	50%		일상 및 환자이용공간 표면소독
4급암모늄 화합물	벤잘코늄염화물	0.05% – 0.5%	10분 이상	일상 및 환자이용공간 표면소독
과산화물	과산화수소	0.5%	5분 이상	일상 및 환자이용공간 표면소독
페놀 화합물	클로록실레놀	0.12%	30초 이상	일상 및 환자이용공간 표면소독

◈ 차아염소산나트륨 사용시 주의사항

○ 희석액 준비

- 환기가 잘되는 곳에서 차아염소산나트륨을 희석하고 사용
- 뜨거운 물은 차아염소산나트륨의 활성 성분을 분해하여 소독효과가 없게 되므로 희석 시 냉수 사용

○ 차아염소산나트륨 사용시 주의사항

- 금속, 양모, 나일론, 실크, 염색된 직물 및 페인트 표면에 사용 금지
- 희석액이 묻은 손으로 눈을 만지지 말기
  ※ 차아염소산나트륨이 눈에 들어간 경우 즉시 물로 15분 이상 헹구고, 의사와 상담
- 차아염소산나트륨을 다른 가정용 세제와 함께 사용하면 소독 효과가 감소하고 위험한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섞지 말 것
- 희석되지 않은 차아염소산나트륨은 햇빛에 노출 될 때 유독 가스를 방출하므로 서늘하고 그늘진 곳에 보관하고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
- 차아염소산나트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분해되므로 효과를 보장하기 위해 최근에 생산된 차아염소산나트륨을 구입
  ※ 24시간 이내 희석된 차아염소산나트륨을 사용하고, 사용 후 잔량은 폐기
- 표면에 유기물이 있는 경우 효과가 저해되므로 차아염소산나트륨으로 소독하기 전에 표면의 유기물을 깨끗이 제거함

□ 임시 소독

○ **(실시 시기 및 주기) 학교 내 확진자** 발생시 또는 **행사 등 특이사항** 발생시 **노출 시설**에 대한 소독 실시(1회)

○ **(실시 방법)** 정기소독과 같은 방법으로 **전문 소독업체 위탁** 시행

□ **환자발생시 소독 방법**

○ 청소·소독을 시작하기 전에 방수성 장갑과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청소 및 소독을 하는 동안 얼굴(눈, 코, 입)을 만지지 않는다

○ 소독제 희석액을 준비한다.

* 제조업체의 주의사항 및 설명서 준수하여 희석하거나 차아염소산나트륨의 경우 1000ppm 희석액

○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어 둔다.

○ 소독 전에 세제(또는 비누)와 물을 사용하여 청소한다.

○ 소독 구역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준비된 소독제로 바닥을 반복해서 소독한다.

○ 준비된 소독제로 천(타올)을 적신 후 자주 사용하는 모든 부위*와 화장실 표면을 닦는다.

* 손잡이, 팔걸이, 책상, 의자, 키보드, 마우스, 스위치, 블라인드, 창문, 벽 등

○ 침대 시트, 베개 덮개, 담요 등은 세탁기에 세제를 넣고 온수 세탁한다.

* 고온에서 섬유세탁용 살균제 사용시 위해가스 발생, 옷감손상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제조사에서 안내하는 방법에 따라 60℃ 이하에서 사용

○ 코로나19 의사환자가 사용했던 매트리스, 베개, 카펫, 쿠션 등은 검사결과가 나올 때 까지 사용하지 않는다.

* 검사결과가 양성인 경우, 세탁이 어려운 매트리스, 카펫 등은 전문소독업체에 위탁하여 적절하게 소독하거나 스팀(고온) 소독

○ 소독에 사용한 모든 천(타올)과 소독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전용봉투에 넣는다.

○ 일회용 가운을 벗고 비누와 물로 손을 씻는다. → 장갑을 벗고 비누와 물로 손을 씻는다. → 고글을 제거하고 비누와 물로 손을 씻는다. → 보건용 마스크를 제거하고 비누와 물로 손을 씻는다.

○ 일회용 가운, 장갑과 마스크는 각각 벗을 때마다 전용봉투에 넣는다.

○ 소독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은 다른 가정용 폐기물과 분리하여 처리한다.

○ 소독 후 즉시 샤워하고 옷을 갈아입는다.

○ 소독한 장소를 환기 시킨다.

○ 소독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발생시 시설 내 지정장소에서 머물게 하고,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또는 지역번호+120)에 문의

☑ **코로나19 환자 발생 시 소독은 전문소독업체에 위탁 권고**

참고5	학교 내 마스크 착용 수칙

□ 학교 내 마스크 착용 기본수칙

◇ 학교 일과시간 중에는 마스크를 쓰세요

○ 교실, 복도 등 실내공간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마스크를 쓰세요

○ 마스크는 보건용, 수술용, 비말차단용, 면마스크 모두 가능해요

○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은 의사 선생님과 마스크를 쓰는 것에 대해 상담하고 상담내용에 맞게 써주세요

◇ 이럴 때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 머리가 아프거나 숨이 차면 마스크를 즉시 벗고, 괜찮아질 때까지 벗고 있어요 이럴 땐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떨어지고 이야기를 가능한 하지 마세요

○ 운동장, 교정 등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떨어져 있다면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럴 땐 이야기를 가능한 하지 마세요

◇ 마스크를 쓰고 있을 때 지켜주세요

○ 얼굴 크기에 맞는 적당한 마스크를 골라서 코와 입이 보이지 않도록 얼굴에 잘 맞게 쓰세요

○ 마스크를 쓰고 있을 때는 마스크를 만지지 않아요. 만졌다면 30초 이상 흐르는 물과 비누로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을 씻듯이 문지르세요

○ 마스크를 서로 바꿔쓰거나, 쓰던 마스크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안돼요

◇ 마스크를 쓰기 전이나 벗을 때 지켜주세요

○ 마스크가 더러워지지 않도록 마스크를 만지기 전에 30초 이상 흐르는 물과 비누로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을 씻듯이 문지르세요

○ 마스크를 벗을 때는 앞면에 손을 대지 않고, 끈만 잡고 벗으세요

○ 마스크를 버릴 때는 아무 곳에나 두지 말고 즉시 쓰레기통에 버리고, 30초 이상 흐르는 물과 비누로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을 씻듯이 문지르세요

◇ 마스크를 잃어버리거나, 더러워질 때, 망가질 때 지켜주세요.

○ 학교에 올 때 마스크를 여유있게 가지고 오고, 마스크를 잃어버리거나, 더러워지거나 망가졌을 때 새 마스크를 쓰세요
새 마스크를 쓰기 전까지는 주변 사람들과 가능한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 학생용 마스크 착용 세부수칙

◇ 실내에서 지켜주세요

(수업시간)

○ 수업시간에는 마스크를 쓰도록 하고, 토론·영어수업 등과 같이 말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 머리가 아프거나 숨이 차면, 바로 마스크를 벗고 선생님께 알리세요. 괜찮아질 때까지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좋아요

(쉬는시간)

○ 쉬는 시간에도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어요

○ 화장실을 이용할 때도 마스크를 쓰고, 화장실 이용 후에는 30초 이상 흐르는 물과 비누로 손을 씻으세요

○ 머리가 아프거나 숨이 차면, 바로 마스크를 벗고 선생님께 알리세요. 괜찮아질 때까지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좋아요

(점심시간)

○ 점심을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거나, 식사를 마치고 식판을 가져다 놓을 때도 마스크를 써주세요

○ 점심을 먹을 때는 친구와 2m(최소 1m) 이상(두 팔을 벌려도 닿지 않을 만큼) 거리를 두고 앉아 마스크를 벗어요. 밥을 먹을 때 이야기를 가능한 나누지 않아요

○ 벗은 마스크는 얼굴에 닿지 않는 바깥쪽이 식탁에 닿도록 잘 놓아두세요

◇ 실외에서 지켜주세요

○ 운동장과 같은 실외에서 사람 간 2m(최소 1m) 이상(두 팔을 벌려도 닿지 않을 만큼) 떨어져 있다면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 실외수업(체육수업, 야외수업 등)을 할 때 사람 간 2m(최소 1m) 이상(두 팔을 벌려도 닿지 않을 만큼) 떨어져 있다면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 다만, 사람들과 자주 부딪히거나 가까운 곳에서 활동하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쓰고 활동하세요

□ 교사용 마스크 착용 세부수칙

○ 수업 중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쓰세요. 마스크는 보건용, 수술용, 비말차단용, 면마스크 모두 가능합니다.

* 얼굴 전체를 가리는 보호구를 사용할 경우 학생과 최소 2m 이상 거리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학생과 보호자가 보호구 사용에 대해 불안해 하는 경우 사용을 지양합니다.
* 얼굴 전체를 가리는 보호구(안면보호구)는 이마 부분이 막혀있어야 하며, 귀 옆 부분까지 얼굴 전체를 덮고, 턱 아래 목까지 내려오는 길이어야 합니다.

○ 머리가 아프거나 숨이 차면, 바로 마스크를 벗고 수업을 잠시 중단하세요. 이 경우 학생과 2m 이상 거리를 유지하고, 이야기를 가능한 하지 마세요.

□ 교사용 학생 지도수칙

○ 올바른 마스크 착용방법에 대해 수시로 교육해 주세요

○ 학생들이 손쉽게 손 소독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실, 복도 등에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주기적으로 사용하도록 안내해 주세요

○ 가급적 학생들에게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 시간을 만들어주세요

* 2m 이상 거리 두기가 가능하고, 충분한 환기가 가능하면서 학생들이 소규모로 수업이나 특별활동 시간을 가지는 경우 등

○ 학생들이 마스크를 잃어버리거나, 망가졌을 때, 지저분해졌을 때 집에서 가져온 새 마스크를 쓰도록 안내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친구들과 이야기하지 않도록 교육해 주세요

○ 기저질환이 있는 학생은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 의사와 상담하도록 안내하고, 상담내용에 맞게 해당 학생을 지도해주세요

※ 기저질환 : 만성폐질환, 당뇨, 만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 만성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 중인 환자 등

참고6 냉난방기 등 사용 시 환기 수칙

1 일반원칙

○ **(기본 방향)** 냉난방기 사용시 실내공기가 재순환되고 공기의 흐름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더 멀리 확산될 우려가 있어 **자주 환기**하고, **풍향 및 풍량에 주의**하여 사용

- 가능한 자주 외부 공기로 환기하고, 냉난방기·공기청정기의 바람이 사람에게 직접 향하지 않도록 하고, 바람의 세기를 가능한 낮춰서 사용

※ (공기청정기) 사용설명서에 따라 제품별 특성을 고려하여 설치, 미세먼지 고농도시기에 제한적으로 사용 권고

※ 이외 사항은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실내공기질관리법, 학교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름

2 세부원칙

○ **(사용 전·후)** 냉난방기 내부 및 실내 오염물질 제거를 위해 출입문과 창문을 모두 열어둔 상태에서 **송풍 등**을 통해 **최대 풍량**으로 **30분 이상 가동**함을 **권고**

※ 교실별 개별 냉난방기·공기청정기 사용 등으로 학교 여건상 사용전·후 시행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는 학교장의 판단하에 1일 1회(사용 전 또는 사용 후) 이상 적용 가능

○ **(사용 중) 쉬는 시간, 점심시간**마다 환기하기**(1회 환기 시 겨울철 3분 이상, 여름철 10분 이상)**

※ 기계환기 시설은 기계환기와 자연환기 병행 실시

- 환기 시에는 창문과 문을 개방하여 **맞통풍**하기
- **바람 방향**은 **천장 또는 벽**으로 향하게 하고, **바람의 세기**는 **가능한 약하게 하기**
- 화장실은 문을 닫고 화장실에 설치된 배기팬을 **상시 가동**하여 환기
-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필터**는 사용설명서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관리**

※ 필터 청소 또는 교체 시에는 마스크, 장갑 등 기본적인 보호 조치 하에 실시하고 완료 후 손 씻기 등 위생수칙을 준수

3 그 외의 사항

○ 학교에서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환기와 함께**...

- **마스크 착용, 호흡기 에티켓, 손 위생, 다른 사람과 2m(최소 1m)이상 거리두기**
- 학교 내 사람들의 손이 **자주** 닿는 표면을 **소독**(최소 일 1회 이상) 하기
- 유증상자가 이용하지 않도록 **사전안내 및 출입관리 강화**하기

※ 본 내용은 국내외 문헌 검토와 전문가 자문을 근거로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감염 예방을 위해 생활방역 수칙의 일환으로 방대본(질병청)에서 권고하는 사항으로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학교 실정에 맞게 보완함

※ (참고자료) 유럽난방환기공조연합 COVID-19 guidance document('20.8.3.), 미국냉난방공조학회 Epidemic Task Force('20.8.17.), 한국건설기술원 냉난방기 가동시 호흡기 감염병 전파 양상 및 운영 가이드라인 연구 중간보고서('20.10.23.)

참고7 학생 및 보호자 준수사항

※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는 학생에게는 "등교 중지된 경우 생활수칙"을 준수하도록 제공

<학생 준수사항>

□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① 다음의 경우 반드시 비누(또는 손소독제)와 물로 손을 씻습니다.
가. 식사 전
나. 화장실 이용 후
다. 학교에 다녀온 후(또는 외출 후) 집에 도착하자마자

② 기침예절을 준수합니다.
가 기침을 할 때에는 휴지나 옷소매로 가리고
나. 사용한 휴지는 바로 버린 후
다. 반드시 비누와 물로 30초 이상 깨끗이 손씻기

□ **다음의 경우에는 등교를 하지 않고 담임선생님에게 알립니다.**

① 37.5℃ 이상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경우

② 해외 여행을 다녀왔거나 확진환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경우

③ 가족(동거인) 중 해외여행이나 확진환자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 **등교 중지된 경우 반드시 다음의 생활수칙을 준수합니다.**

① 바깥 외출 금지

② 가능한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③ 방문은 닫은 채 창문을 자주 열어 환기시키기

④ 식사는 혼자서 하기

<보호자 및 가족 준수사항>

□ **매일 아침** 자녀가 등교하기 전 체온과 호흡기증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등교를 시키지 않고 담임선생님에게 알립니다.**

①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경우
② 해외 여행을 다녀왔거나 확진환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경우
③ 가족(동거인) 중 해외여행이나 확진환자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 **자녀가 등교 중지된 경우 보호자께서는 반드시 다음의 내용을 준수하도록 자녀에게 교육합니다.**

① 바깥 외출 금지
② 가능한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③ 방문은 닫은 채 창문을 자주 열어 환기시키기
④ 식사는 혼자서 하기

□ **등교중지 중인 학생의 가족은 다음의 생활수칙을 준수합니다.**

① 등교중지 중인 학생의 건강상태(발열, 호흡기증상 등)를 매일 주의 깊게 관찰합니다.
② 등교중지 기간 동안 가족 또는 동거인은 최대한 등교중지 중인 학생과 접촉하지 않도록 합니다.
- 특히, 노인, 임산부, 소아, 만성질환, 암 등 면역력이 저하된 분은 접촉을 금지합니다.
- 외부인의 방문도 제한합니다.

③ 등교중지 중인 학생과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시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자주 환기를 시킵니다.
④ 개인 물품(수건, 식기류 등)을 사용하도록 하며, 화장실, 세면대를 공용으로 사용한다면, 사용 후 소독(락스 등 가정용소독제)하고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합니다.

< 가정통신문(안) >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실내 생활체육시설(탁구장 등), 종교시설, 노래방, PC방 등'에서 코로나19 감염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밀폐되고 밀집된 시설**에 학생들이 방문하는 경우 감염의 우려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현재 모든 학생들의 등교가 이루어지고 있어, 학교 내에 감염이 전파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학부모님들께 다음 사항을 강조**하여 말씀드리니, **가정 내에서 자녀지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 내 자녀지도 협조 사항>

1.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지하 공간, 밀폐된 시설은 이용하지 않기
2. 버스, 지하철, 도서관 등 다수가 모이는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 생활화하기
3. 놀이·체육시설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밀집된 시설은 이용 자제하기
4. 운동 등은 가급적 사람 간 거리두기(2m)가 가능한 야외에서 하기

2021년 0월 0일

ㅇㅇ 학 교 장

참고8 코로나19 임상증상 있는 학생 등교관리 기준

○ (기본원칙)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은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검사** 받기

- **검사결과 음성**이거나 선별진료소 방문 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과 관찰 후 증상이 **호전되면 다음날 등교**

○ **(예외)** [1]**선별진료소**의 **검사(진단·방문) 결과**와 [2]**증상**에 대한 **의사 소견(진단)***을 학교에 **제출**한 경우, 증상 호전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

*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연관성 여부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됨

- 위 2가지 내용의 확인 주기는 **학교장**이 학생의 질환명·증상 정도를 **면밀하게 살펴본 후, 결정**하여 **가정**에 **안내**

참고9	등교수업 이후 학생 심리지원 방안

☆ (상시 심리지원) 예방관리(교육, 상담) → 심리상태 파악 → 학교내 관리 → 전문가(병의원) 지원

☆ (등교중지 학교 위기관리) 응급 위기개입 (72시간 이내) → 위기관리 → 후속 지원 (1개월 후)

□ 지원개요

○ **(목적)** 코로나19 관련, 불안, 스트레스, 등교수업 이후 학교 내 확진자 발생교 **심리적 충격 완화** 및 **학교 위기관리**(PFA)를 통한 **정상화 지원**

* PFA(Psychological First Aid): 심리치료 기법이 아닌, 학교 구성원별 대처법 등 학교 정상화를 위한 위기관리 훈련법

○ **(대상)** 자가격리자 및 확진자 발생학교 등 모든 학교 **학생·교직원·학부모**

○ **(방법)** 전화 또는 이메일 등 **비대면 지원, 필요시 학교 방문** 대면 지원

○ **(절차)** **정신과전문의로 구성된** 교육부 **'심리지원단'**을 **중심**으로 위험 요소 평가 및 수준별 지원

<전체 흐름도>

예방 관리		조기 발견		상담 관리
(교육, 상담) * 교육부 안내 교육자료 등 활용	▶	(심리상태 파악) * 교육부 안내 심리평가지 활용	▶	(심리적 안정감 회복, 부정적 정서 관리) * 학교, 교육청, 교육부 심리지원단

확진자 발생 (등교중지)	↘	72시간 이내	응급 위기 개입		위기관리		1개월	경과 확인 및 후속 지원
			(대처요령 교육) * 교육부 심리지원단	▶	(대면, 비대면)	▶		(확진자 학교 복귀 지원 및 심리사회적 피해 예방법 교육) * 교육부 심리지원단

※ '등교중지' 조치학교 위기관리 등 정신과 전문의 지원 요청: 교육부 심리지원단 (☎ 02-6959-4540)

참고10 자가 격리 학생을 위한 마음건강 지침

격리는 감염자나 보균자,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으로부터 감염원이 전파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격리는 나를 더 잘 관찰하고 치료하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사회를 보호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격리된 상황을 수용하고 자신의 반응을 이해하며 회복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1. 격리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현실적으로 준비하도록 대비하세요.

상당한 스트레스와 현실적인 불편이 따르는 격리지침을 지키기 위해서 먼저 격리에 대한 이해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감염병 유행 상황과 격리의 중요성을 받아들이고, 정해진 격리 기간 동안 지켜야 하는 행동지침을 명심하세요. 또한, 필요물품, 예정되어있던 일정 등 격리 기간 동안 예상되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는지 점검하고 해결 방안이 마련되었는지 확인하세요.

2. 믿을만한 정보에 집중하세요.

감염에 대한 불안은 끊임없이 정보를 추구하게 합니다. 그러나 불확실한 정보는 오히려 불안과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이성적인 판단을 어렵게 합니다. 정보의 선별에 우선순위를 두어 질병관리본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집중하며 SNS와 뉴스를 지나치게 반복적으로 확인하지 않도록 합니다.

3. 나의 감정과 몸의 반응을 알아차리세요.

약간의 걱정, 불안, 우울, 외로움, 무료함이나 수면의 어려움, 신체적인 긴장은 정상적인 스트레스 반응입니다. 현재 발생한 일 또는 앞으로 일어날 일이 위험하거나 위협받고 있다고 인식할 때 불안감이 생기며, 이는 두근거림, 두통, 소화불량, 불면증 같은 신체적인 긴장 반응을 유발합니다. 불안감을 부모님이나 선생님 그리고 친구들과 나누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전염병에 대한 어느 정도의 불안과 긴장은 정상적인 반응이지만, 과도한 두려움이나 공포감에 압도되고 있다면 정신건강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불확실함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세요.

감염병 유행 상황이 빠른 시간 안에 종식되기를 바라는 강력한 소망 때문에 마법적인 조치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종 전염병은 축적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많은 것이 불확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불확실함을 그저 정상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며, 대신에 스스로 통제 가능한 활동으로 주의를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가족과 친구와 소통을 지속하세요.

격리 기간 동안 기존의 친구들과의 교류와 학교생활 등의 활동이 제한되기 때문에 외로움, 소외감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화상 전화, 메일, 온라인 등을 이용해서 가족과 친구 등 진심으로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6. 가치 있고 긍정적인 활동을 유지하세요.

격리 기간은 동시에 학교생활과 기존의 의무에서 벗어나서 오롯이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격리 기간을 어떻게 보낼지 미리 계획을 세우고 평소에 하지 못했던 것들을 시도해 보세요. 어렵지만 격리 기간 중에 자신을 위한 가치 있는 활동을 늘려보세요. 편지를 쓰거나 매일 일기나 기록을 남기는 것도 좋습니다.

7. 규칙적인 생활을 하세요.

일상의 생활과 기존의 역할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생활 리듬이 흐트러지기 쉽습니다.
일정한 시간에 식사를 하고, 가벼운 실내 운동을 통해 활력을 유지하세요. 특히 일정한 시간에 잠을 자고 깨는 것이 정신건강을 지키는 데에 매우 중요합니다.

8. 자부심을 가지세요.

격리는 자신과 타인을 위한 가장 중요한 감염병 예방 활동입니다. 여러분이 격리 생활을 하는 것에 선생님들과 친구들 모두는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악플 대신 감사의 글과 응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격리가 끝난 후에는 당당하고 자신 있게 학교와 일상에 복귀하세요.

참고11	방역수칙과 함께하는 안전한 학교생활 포스터

참고12	코로나19 행동수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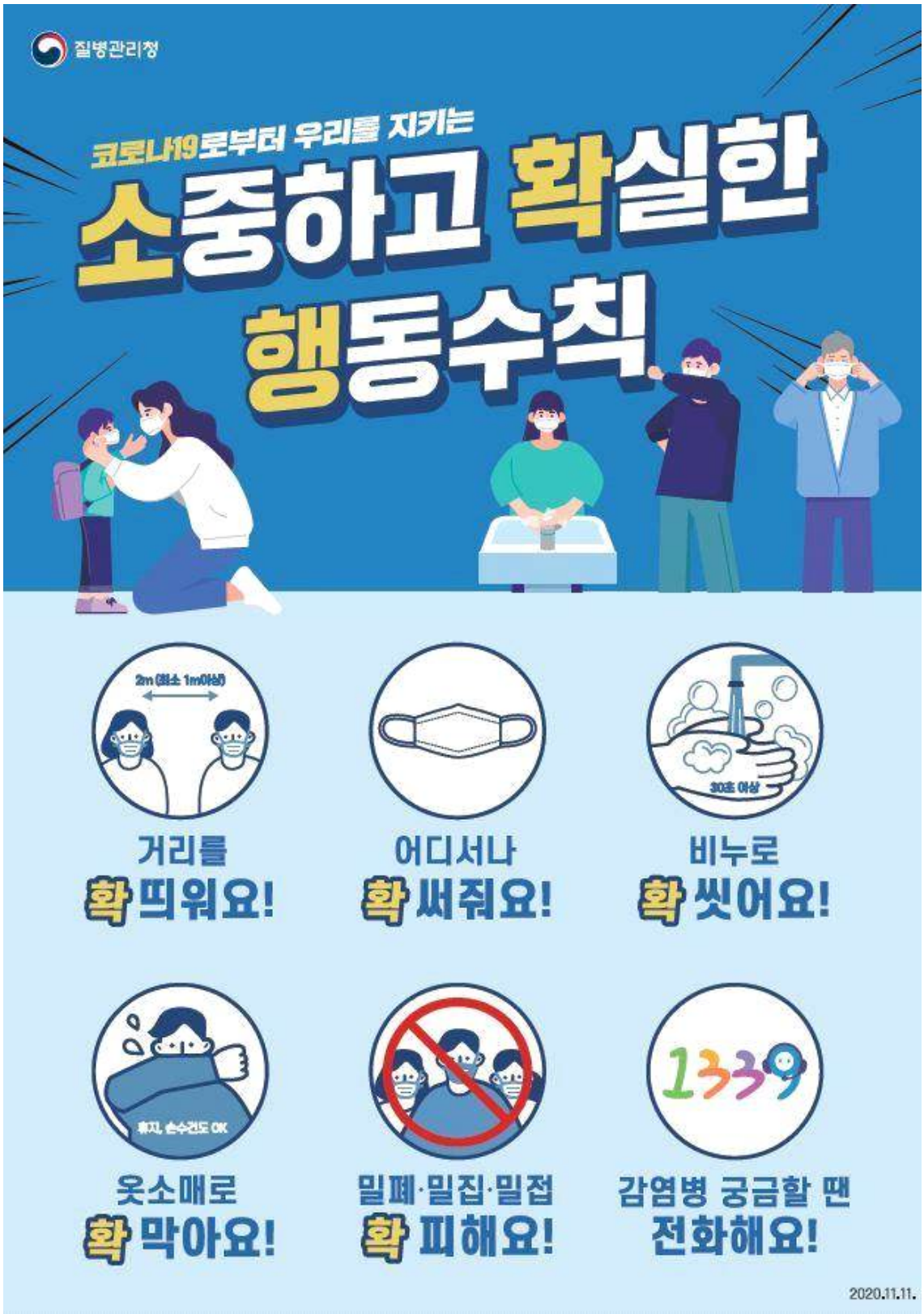

참고13	코로나19 학교생활 수칙

참고14	유치원 생활방역 수칙

참고14	코로나19 예방 손 씻기 포스터

참고15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질병관리청 2021.05.24.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

코로나19 대응지침 제10판 부록3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바깥 외출 금지
- 자가격리 장소에 외부인(함께 살지 않는 가족 포함)의 방문도 금지
  ※ 특수한 경우(돌봄서비스, 방문간호 등) 관할 보건소(담당공무원)와 연락 후 방문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 방문 닫은 채로 창문 열어 자주 환기 시키기 • 식사는 혼자서 하기
- 화장실과 세면대는 단독으로 사용(공동으로 사용 시 락스 등 가정용 소독제로 소독하기)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담당공무원)로 먼저 연락하기

시급성이 요구되는 경우 및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 등 외출이 불가피한 경우 자차 등 별도 이동수단 이용(대중교통 이용 불가)

응급상황*발생 시(112 또는 119에 신고 시) 출동대원에게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자임을 알리기 * 응급상황 예시 : 중증질환 악화, 분만, 사고 · 재해 등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기

가족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 자가격리대상자를 포함하여 모두 항상 마스크 착용
(집 안에서 서로 독립된 공간에 있을 시 마스크 미착용 가능)

개인물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 사용하기
- 의복 및 침구류 단독세탁 • 식기류 등은 별도로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에 다른 사람이 사용 금지

건강 수칙 지키기
- 손씻기, 손소독 등 개인위생 철저히 준수 • 기침이 날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
- 마스크가 없을 경우 소매로 가려 기침하기, 기침·재채기 후 손씻기·손소독하기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의무적으로 설치
※ 자가격리 중 격리 장소의 무단이탈 등 격리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앱과 연동되는 손목안심밴드를 착용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시설격리 조치, 격리 조치 위반자가 앱 설치를 거부하거나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에도 즉시 시설격리 조치됨 (시설이용 비용을 자부담할 수 있음)

자가격리자 방에서 배출된 쓰레기는 분리수거 하지 말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부록 13) 참조

자가모니터링 준수사항

관할 보건소(담당공무원)에서 하루에 1회 이상 연락드릴 예정이니, 이때 감염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는 경우 증상을 알려주십시오.
- 매일 아침, 저녁 체온 측정
- 호흡기증상 등 감염 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건강상태 체크

코로나19 임상증상

• 주요 임상	발열(37.5 ℃ 이상), 기침, 호흡A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 그 외 증상	피로, 식욕감소, 가래,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혼돈, 어지러움, 콧물이나 코막힘, 객혈, 흉통, 결막염, 피부 증상 등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발생할 경우 먼저 관할 보건소(담당공무원)와 상의하거나
질병관리청 콜센터 국번없이 1339로 알리기

○ 담당보건소 ○ 담당자 ○ 긴급연락처

질병관리청

2021.05.24.

자가격리대상자 가족 및 동거인 생활수칙

코로나19 대응지침 제10판 부록4

- **자가격리대상자와 분리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가족 또는 동거인은 최대한 자가격리대상자와 접촉하지 않기**
  - 특히, 노인, 임산부, 소아, 만성질환, 암 등 면역력이 저하된 가족 또는 동거인은 접촉 피하기
    ※ 가능한 한 노인, 임산부, 소아, 만성질환, 암 등 면역력이 저하된 가족 등은 따로 생활
  - 자가격리 장소에 외부인(함께 살지 않는 가족 포함)의 방문 금지
    ※ 특수한 경우(돌봄서비스, 방문간호 등) 관할 보건소(담당공무원)와 연락 후 방문
- **가족 또는 동거자가격리대상자와 동거가족(동거인 포함) 모두 항상 마스크 착용**
  (집 안에서 서로 독립된 공간에 있을 시 마스크 미착용 가능)
- **손길이 닿는 곳의 표면*을 자주 소독하고 거주 공간 자주 환기**
  * 테이블 위, 문손잡이, 조명 스위치, 수도꼭지, 냉장고 문고리, 키보드, 침대 옆 테이블 등
- **물과 비누 또는 손세정제를 이용하여 손 자주 씻기**
- **자가격리대상자와 생활용품을 구분하여 사용하기 (식기, 물컵, 수건, 침구 등)**
  - 자가격리대상자의 식기류 등은 별도로 분리하여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도록 하기
- **자가격리대상자의 건강상태 주의 깊게 관찰하기**
- **자가격리대상자의 동거가족(동거인 포함)이 많은 사람과 접촉하거나 집단시설*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감염병 발생 및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자가격리대상자의 격리해제일까지 모임이나 업무 제한 권고**
  * 집단시설 : 학교, 학원, 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등
- **응급상황*발생 시(112 또는 119에 신고 시) 출동대원에게 가족 및 동거인 중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자가 있음을 알리기**
  * 응급상황 예시 : 중증질환 악화, 분만, 사고·재해 등
- **자가격리자 방에서 배출된 쓰레기는 분리수거 하지 말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부록 13) 참조**

코로나19 임상증상

- **주요 임상** 발열(37.5 ℃ 이상), 기침, 호흡A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 **그 외 증상** 피로, 식욕감소, 가래,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혼돈, 어지러움, 콧물이나 코막힘, 객혈, 흉통, 결막염, 피부 증상 등

자가격리대상자에게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발생할 경우
먼저 관할 보건소(담당공무원)와 상의하거나
질병관리청 콜센터 국번없이 1339로 알리기

○ 담당보건소 ○ 담당자 ○ 긴급연락처

참고17 실제 감염사례 안내

유치원

〈사례1〉 공동으로 사용하는 교구 소독 중요

- 놀이중심 교육활동 특성상, 공용으로 사용하는 장난감 교구 등이 많고 원아 간 접촉이 많았음. 교구 소독과 급·간식 지도를 철저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함

초등학교

〈사례1〉 조기 검사 중요

- 교직원이 증상 있었음에도 검사를 늦게 받았음. 또한 유증상자와 같은 교무실을 사용하는 교직원들이 외부에서 같이 식사·감염됨

중학교

〈사례1,2〉 학원 내 방역수칙 준수 및 지도·감독 중요

- 학원 직원이 최초 감염되었고, 그 후 수강생에게 전파되어 학교 및 가정까지 N차 감염되었음. 학원 내 방역수칙이 철저하게 이행되어야 하겠음
- 예체능 실기 위주 학원에서 시작되어 여러 학교로 확산된 사례가 있음. 학원 내 방역수칙을 보다 철저하게 준수하여야 할 뿐 아니라, 타 시도 대회 출전이 있는 경우 신중하게 참가 결정을 해야할 것으로 보임

고등학교

〈사례1,2〉 교실 공동사용 자제, 철저한 환기 중요

- 확진학생이 자율학습실을 이용하였고,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전학년 포함된 교내 특강이 실시되었음. 다수 학생이 경미한 증상이 있었으나, 자가진단 등에 미표시한 부분이 아쉬움
- 같은 학년 여러 반에서 발생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이동수업이 확산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음.

〈사례3,4〉 시험기간 학생 생활지도 및 자체노력 중요

- 뚜렷한 원인은 끝내 못찾았음. 학년도 제각각. 다만 시험기간이었고, 하교 후 다수 학생들이 스터디카페 등 외부시설을 많이 이용한 것으로 보임
- 시험 종료 후 학생들이 해방감에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였음. 이용자제 지도·안내를 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음. 학생회 주관 활동 등을 통해 학생들 자체적으로 자제 노력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임

〈사례5〉 기숙사 학교의 입소 전 검사시기(참고)

- 전국단위 기숙사학교로 입소 전 PCR검사 했음에도 조기차단 못하였음. 금요일 귀가→일요일 입소하는 기숙사생이라면 일요일 검사보다 2~3일 후 검사가 효과적으로 보임
  ※ 감염 직후 검사결과가 양성으로 잘 안나오기 때문임

참고18 학교급식 방역 세부관리 방안

□ 거리두기 단계별 급식방법

❶ **(식사환경)** 식탁 칸막이 설치, 좌석 배치 조정(띄어앉기·지정좌석제 운영 등), **시차배식**(학년별·반별) 등을 통해 학생 간 거리두기 강화

- 급식실 내 **개인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밀집도 개선을 위해 **교실 배식 전환·병행 검토**(반별 배식 기구 및 운반 인력 추가 등 사전 준비 필요)

※ (1·2단계) 칸막이 설치(확대) 또는 거리두기(한 칸 띄움) → (3단계) 칸막이 설치하고 한 칸 띄움

※ 칸막이 설치 시 권장 높이(참고) : (초) 40~50cm, (중) 54~63cm, (고) 55~67cm

❷ **(제공식단)** 전면등교 적응기(2주) 및 거리두기 3단계 시, **조리·배식·식사 시간 단축**을 통한 접촉 최소화를 위해 **식단 간소화하여 제공 가능**

※ **(전면등교 적응기, 2주)** 제공되는 **음식의 온도·시간 관리가 어려운 경우** 간편식 등 **식단 간소화** 가능 → **(1·2단계)** 일반급식 → **(3단계) 식단 조정을 적용**한 **단계적 급식**
(예: 대체식(1~3일, 빵/떡 및 음료·후식 등) ☞ 간편식(1~2주, 일품요리 또는 덮밥류 등) ☞ 일반급식)

※ 대체식 제공 또는 개인 도시락 지참 시는 학부모 의견수렴 및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 학교인근 대체식 제공업체 유무 및 위생점검 등은 관할 지자체와 협의

※ 간편식 등 제공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 및 1회용품 사용 규제' 한시적 적용 유예(학생건강정책과-2437, '20.3.27.)

※ 식사(대체식, 간편식, 일반식)는 지정된 식사장소에서 섭취

≪ 거리두기 단계별 급식 방법(안) ≫

<table>
<tr><th colspan="3">단계</th><th>1단계</th><th>2단계</th><th>3단계</th><th>4단계</th></tr>
<tr><th colspan="3">단계조정 기준(확진자)</th><th>500명 미만</th><th>500명 이상</th><th>1,000명 이상</th><th>2,000명 이상</th></tr>
<tr><td rowspan="3">급식 방법</td><td rowspan="2">식사 환경</td><td>칸막이 有</td><td colspan="2">모든 자리에 착석 또는 한 칸 띄어 앉기</td><td rowspan="2">식탁 칸막이 설치하고 한 칸 띄어 앉기</td><td rowspan="3">원격수업 전환 (급식중단)</td></tr>
<tr><td>칸막이 無</td><td colspan="2">거리두기(1m 이상) 유지 또는 한 칸 띄어 앉기</td></tr>
<tr><td colspan="2">제공식단</td><td colspan="2">일반식
※ 전면등교 적응기(2주) 간편식 등 식단 조정 (음식의 온도·시간 관리가 어려운 경우)</td><td>단계적 급식
(간편식 등 식단 조정)</td></tr>
</table>

※ 동 거리두기 단계별 급식방법은 지역 및 학교 방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용 가능, 필요 시 수업시간의 탄력적 조정 등으로 급식시간 추가 확보 가능

□ 급식실 방역관리

❶ **(소독·환기)** 급식개시 이전에 급식소 전체 **특별소독**, 학생 접촉이 빈번한 **시설·기구 매일 청소·소독***, **급식 전·후 수시 환기 강화**

* 희석한 차아염소산나트륨 등을 사용하여 소독하고, 소독 후 충분한 환기 실시

❷ **(공정관리) 급식 전 과정**(검수·보관·조리·배식·세척 등)에서 접촉 최소화 및 식품·기구 등을 통한 감염방지를 위해 **공정별 위해요소 관리**

【 급식공정별 위해요소 관리방안 】

단계	위해요소	관리방안(예)
검수	종사자 비말에 의한 식품 오염	• 검수 담당자는 검수 전 마스크 착용 및 손 세척·소독
	배송직원과 접촉	• 배송직원은 학교 도착 시 발열검사 실시 및 건강상태 확인, 마스크 착용 및 일회용 위생장갑 착용 후 손 소독 • 검수 시 배송직원과 거리두기 실천
	종사자 간 접촉	• 검수 후 카트 등을 이용하여 식재료 이동(종사자 간 거리두기)
보관	종사자 비말에 의한 식품오염	• 식품창고, 냉장·냉동고에서 식품 입·출고 시 마스크 착용 철저
전처리 및 조리	종사자 비말에 의한 식품 오염	• 종사자는 모든 급식공정에서 마스크를 올바른 방법으로 착용
	종사자 간 접촉	• 이동식 작업대·싱크대 등을 이용하여 작업 중 거리두기 실천 • 가능한 경우 한 작업대·싱크대에 한 명씩 작업 권장 및 분산 조리
배식	배식 대기 중 학생 간 접촉	• 학생은 식사 전 발열검사 및 마스크 착용 후 식사장소로 이동 • 식당 입구에 손소독제를 비치하여, 식사 전 사용 • 배식 대기 시 적정 간격(1m 이상) 유지(바닥 거리두기 스티커 부착 등) • 급식 게시판 등을 활용하여 방역수칙 등 교육자료 게시
	손에 의한 식기구 오염	• 지정된 직원이 마스크와 위생장갑을 착용 후 식판·수저를 제공하거나, 학생이 식사 전에 손 세척·소독 또는 위생장갑 착용 후 식기구를 가져가도록 함
	배식원-학생 접촉	• 배식 종사자는 배식 전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등 건강상태 확인 • 배식 전 마스크 착용 및 손 씻기·소독, 배식용 복장과 위생장갑 착용 • 배식 시 배식 담당 직원과 학생 모두 불필요한 대화 삼가
	자율배식대 운영에 의한 접촉	• 사람 간 및 식기구 접촉 예방을 위해 자율배식대 운영 지양 ※ 자율배식대 운영 시 일회용 위생장갑 제공 및 손잡이가 긴 배식 도구 사용
	식수대에서의 학생 접촉	• 식수대 운영 시, 학생 간 거리두기 실천 • 입을 대고 물을 마시는 식수대 운영 지양(금지) • 음용수 섭취 등을 위해 식사 장소 내에서 이동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추가배식 시 학생 비말오염 및 접촉	• 학생들이 추가 배식을 위해 식사 장소 내 이동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 추가 배식 대기 시 학생 간 거리(최소 1m) 유지토록 지도 • 지정된 직원이 마스크 및 위생장갑 착용 후 추가 배식
식사	식사 시 학생 간 접촉	• 마스크는 식사 직전에 벗고 식사 직후에는 바로 착용 • 식사는 정해진 식사장소에서만 조용히 섭취 ※ 후식 등 일부 음식을 이동하면서 먹는 사례가 없도록 학생 지도 강화 • 식사 시 대화 삼가 • 식사 중 다른 학생과 음식을 나눠 먹지 않도록 지도
청소 및 소독	식당 환기 부족	• 급식 전·후 수시 환기 강화
	학생 접촉 기구 오염	• 학생 접촉이 빈번한 시설·기구 매일 청소·소독* * 희석한 차아염소산나트륨 등을 사용하여 소독하고, 소독 후 충분한 환기 실시

❸ **(방역 인력 활용)** 전면등교에 따라 급식 전 과정에서 업무 증가 등을 고려, **방역인력 적극 활용** 또는 추가 배치 통해 급식 소독·환기·배식 등 지원 검토

※ 또한, 유증상자 발생 등을 대비하여 학교 또는 교육(지원)청 대체인력풀 마련하여 신속 지원

□ 개인위생 및 건강관리

❶ **(식사 지도)** 식사 전 **손 소독**, 배식 대기 시 **적정 간격 유지**, 배식 및 식사 중 **대화 삼가**, **지정된 장소**에서 **식사**토록 (담임)교사, 방역인력 등이 현장지도

※ 급식 후 수업시작 전까지 학생들이 생활 속 거리두기를 준수하도록 생활지도 철저

【 식사 지도 주요 내용 】

- **(손 소독)** 식당 입구에 손소독제를 비치하여, 식사 전 사용
- **(마스크 착용)** 마스크는 식사 직전에 벗고 식사 직후에는 바로 착용

  ※ 추가 배식, 음용수 섭취 등을 위해 식사 장소 내에서 이동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 **(거리 유지)** 배식 대기 시 적정 간격(1m 이상) 유지, 배식 및 식사 중 대화 삼가
- **(지정된 장소에서 식사)** 식사는 식사장소에서만 조용히 섭취

  ※ 후식 등 일부 음식을 이동하면서 먹는 사례가 없도록 학생 지도 강화

❷ **(급식종사자 건강관리)** 급식 과정에서 개인위생 및 건강관리 철저

- (개인위생 관리) 올바른 **손 씻기 및 소독** 철저, **위생장갑** 사용, **위생 복장 및 마스크 착용 등 실시**

【 급식종사자 개인 위생관리 】

- **(손 씻기·소독)** 올바른 손 씻기 방법으로 손 씻기, 70% 에틸알코올 또는 동등한 소독 효과를 가진 살균 소독제를 용법에 맞게 사용
- **(위생장갑 사용)** 식품 취급 시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조리용 고무장갑 또는 일회용 고무장갑(라텍스) 사용, 배식 시 일회용 장갑 사용
- **(위생복장 착용)** 위생복·위생모·위생화 등 착용
- **(마스크 사용)** 비말 전파 차단을 위해 급식 전 공정에서 마스크 착용(급식환경, 환기 상황 등을 고려한 적합한 마스크를 선택하여 올바른 방법으로 착용)
- **(휴게실)** 주기적으로 충분한 환기, 마스크 착용, 개인 간 거리 유지, 휴게실 내부 및 사물함 등 손잡이 수시 소독, 음식 섭취 시 방역 수칙 준수 등

  ※ 휴게실 장소가 협소한 경우에는 유휴교실 등 활용방안도 적극 강구

- (개인방역 관리) 코로나19 의심증상자 발견을 위해 매일 2회(출근 직후, 배식 전) 급식종사자의 **건강상태**(코로나19 임상증상 등) **확인**
  -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급식종사자 발견 시 **학교장에게 즉시 보고 후 귀가 조치** 및 코로나19 행동수칙 안내

※ 출근중단에 따른 급식업무 공백 시 대체인력 활용 또는 비상시 급식운영 대책에 준하여 운영

※ 납품업체 배송직원도 급식실 출입 시 반드시 마스크 및 위생복 착용 철저, 체온 기록 및 건강상태 등 확인, 발열·호흡기 관련 증상 있는 자는 급식실 출입 금지

[참고] 개학 전 학교급식 방역관리 자체점검 체크리스트(예시)

▣ 학교명 :

▣ 점검 일시 : 2021. . . ▣ 점검자 : *학교장 ○○○* (서명)

자체 점검 내용	점검 결과	
	결과(O, X)	시행일자
1 학교별 급식방역 계획 수립(계획 수립 시 포함 사항)		
• 감염예방을 위한 급식운영 계획 - 학교별 학생 접촉 최소화 급식 방안 마련(거리두기 단계별 급식방법* 등 포함) * 칸막이 설치·좌석 배치 조정·시차 배식 등 식사 환경 조성, 단계적 급식 운영 등 급식 방법		
• 급식 운영 방안 학교 구성원 의견 수렴 ※ 급식방법 변경(대체식 제공 또는 개인 도시락 지참 등) 및 급식운영 등 중요 사항에 대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 여부 등		
• 점심시간 지도 교사(교직원) 구성 및 운영 계획		
• 급식소 청소·소독·환기 등 방역관리 계획		
• 급식소 방역물품 확보 및 필요 시 추가 비축 계획		
• 급식종사자 건강 및 개인위생 관리 계획		
• 방역인력 급식운영 활용 계획		
2 급식방역 준비사항 확인		
• 「2학기 급식운영 방안」 학생 · 학부모 등에게 사전 안내 ※ 홈페이지 · 가정통신문 앱 · SNS 등을 활용하여 안내		
• 거리두기 식사 환경 확인 ※ 칸막이 설치 또는 거리두기(1m 이상 실천)·한 칸 띄어 앉기 등 확인		
• 급식게시판 등에 방역수칙 교육자료(포스터, 배식 대기 스티커 등) 게시		
• 식당(식사 장소) 입구에 손 소독제 비치		
• 급식실 전용 체온계 및 방역물품 비치		
• 급식 개시 이전에 급식소(조리실, 식당 등) 특별소독 실시		
• 급식종사자 및 식재료 공급업체 대상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사항 등 사전 교육		
• 외부인(방문객) 급식실 출입 금지 안내문 부착 ※ 단,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학교장의 승인을 받고, 발열 및 호흡기증상 등 확인 후 이상 없을 시 출입기록 작성 및 위생복장 착용 후 출입 허가		
• 방역인력 활용 준비사항 등 확인 ※ 급식소 소독(식탁·칸막이 등), 환기, 배식, 생활지도 등 학교여건에 맞는 역할 부여 등		
▶ **미이행 항목이 있을 경우 2학기 개학 전 조치**		

참고19	학교 기숙사 방역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기숙사 현황

점검일시	학교기숙사 현황							
	전교생 수	입사생 수	남학생	여학생	취침공간 수	남학생	여학생	일시적 관찰실 등

□ 점검 항목

구분	점검항목	점검결과 (○, ×)	비고
입사 전 관리	○ 기숙사 내 침실 사용 시 충분한 거리 확보 여부		
	○ 기숙사 입사 전 학생 건강상태(코로나19 임상증상 등)확인 여부		
기숙사 시설 및 환경 관리	○ 방역관리자 지정 및 기숙사생 관리 방안 수립 및 운영 여부		
	○ 출입문 (가급적) 일원화, 발열체크 실시 여부		
	○ 기숙사 내 공용공간(독서실, 면학실, 정보검색실 등) 사용 최소화, 개방시 충분한 거리확보(칸막이 설치, 좌석 띄우기 등) 조치 여부		
	○ 코로나19 감염예방 행동 수칙(질병정보 및 손씻기, 기침예절 등) 교육 및 홍보물 부착 여부		
	○ 기숙사 내 화장실 개수대에 손세정제, 손소독제, 휴지, 종이타월 등 비치 여부		
	○ 기숙사 내 뚜껑 있는 쓰레기통 비치 및 쓰레기통 관리 여부 (쓰레기통은 매일 비워 오염물질 방치 예방)		
	○ 기숙사 내 주요 공간(화장실, 샤워실 등 공용 공간 포함) 청소, 소독 및 환기 여부		
	○ 사람의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물건에 대한 소독 실시 여부		
	○ 기숙사 내 방역물품(체온계, 손소독제, 마스크 등) 비치 여부		
입사생 및 방문객 출입·이동 등 관리	○ 기숙사 입소생 대상 매일 2회 발열검사 추가 실시 여부 ※ 기상 후 아침식사 전, 수업 종료 후 기숙사 입실 전		
	○ 기숙사 출입, 공용 공간 이용 등을 제외한 동 간, 층 간, 호실 간 이동 제한 여부		
	○ 취침 공간 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철저 및 집단 간식 섭취 금지 조치 여부		
	○ 외출이나 귀가 후 복귀 학생에 대한 관리 조치 여부(방문지 확인 및 발열체크 등 주기적으로 증상 점검)		
	○ 외부인(보호자, 방문자, 음식배달원 등) 출입 제한 조치 여부 ※ 교사 등 학교관계자 접촉은 제외		
코로나19 의심증상자 발생 시 조치	○ 코로나19 의심증상자 발생 시 조치사항 준수 여부		

참고20	학교 기숙사 방역 수칙 포스터

참고21	「학교 방역인력 운영」가이드라인(안)

본 가이드라인은 각급학교 현장에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배치된 **방역 인력의 역할과 임무,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 **효율적인 학교 방역을 지원코자 마련**하였으며, **교육청·학교의 여건에 맞게 수정 활용이 가능** 함.

□ 설정 방향

○ **(교육부)** 학교 현장의 의견수렴('21.6.)을 통해, 집행의 혼선 예방을 위한 포괄적 가이드라인 제시 → 방역인력 운영 범위 등 위임

○ **(교육청·학교)** 학교별 특수성·사정을 감안하여 일선학교 방역 활동 단계에서 탄력적 운영 가능한 계획 수립 및 시행

□ 적용 범위 등

○ **(적용 학교)**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

○ **(예산지원 범위)** '21년 2학기 전면등교에 대비하여,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한시적 방역인력 근로자 인건비**

○ **(채용 제한)** 공무원임용 결격 사유 또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취업 제한이 있는 경우

□ 근무 장소별 업무 세부 내용

○ <u>학교 전반 방역 활동</u>

- 쉬는 시간 복도, 화장실, 교실 외 장소 등에서 학생 간 거리 유지, 마스크 착용 지도 등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학생 지도**
- 등교 시 발열체크 지원, 학교 출입자 관리 지원 및 공간 환기 등
- 교내 공용시설 및 기구(출입문 손잡이, 교구 등) 표면 소독
- 방역용품 관리, 기타 방역활동 **직·간접적**으로 **관련있는 업무**

○ <u>특정 실·장소별 방역 활동</u>

- (보건실) 보건교사 보조업무(의료인 업무 제외)

- (급식실) 학생 접촉이 빈번한 식탁·의자·칸막이 등 급식시설·기구소독, 식사장소 환기, 식사 지도 및 배식 지원

※ 식사 전 손 소독, 배식 대기 시 적정간격 유지, 배식 및 식사 중 대화 삼가, 지정된 장소에서 식사 등 지도 등 포함, 다만, 음식 배식은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소지자만 가능

- (기숙사) 입소 시 발열체크 및 출입자 관리 지원 등

□ 예산 집행 시 참고사항

○ **(집행 비율)** 집행 시 국고와 지방비 **비율(국고 20 : 지방비 80) 준수**

○ **(집행 기간)** ’22. 2월말 ※ 3월말까지 정산 및 보고(교육청→교육부)

○ **(계획 수립)** 인력규모 등을 감안한 학교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되, 아래 사항을 반영토록 권장

- **(역할 정립)** 학교별 방역인력 관리자 지정, 방역 인력 역할 명시

- **(인력 운용)** 선발기준, 지원자격, 채용인원, 근무기간, 인건비, 근무장소 및 4대 보험 지급 등

- **(사전 교육)** 채용 후 사전교육(1시간 내외) 실시(아래사항 포함)

【근로자 금지 행위 목록】 1. 체벌하는 행위 2. 욕설 등 모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행위 3. 신체 접촉 등 과도한 지도로 인해 성적인 모멸감을 주는 행위 4. 지도과정에서 인지한 학교 및 학생에 관한 사항을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 5. 종교적 포교 활동 등 학교방역인력의 활동 목적과 관련 없는 행위 6. 기타 학생의 인권을 해치는 행위 등

- **(계획 변경)** 인원, 근무장소 변경 등은 학교장 내부결재로 변경

[참고 서식]

학교방역인력 활동 일지

<○○○학교>

<table>
<tr><td>일 자</td><td colspan="2">20 . . .( )</td><td rowspan="2">결재</td><td>학교방역인력</td><td>학교방역인력
관리자</td></tr>
<tr><td>성 명</td><td colspan="2">(인)</td><td></td><td></td></tr>
<tr><td rowspan="6">내 용</td><td>활동시간</td><td colspan="4">활동 내용</td></tr>
<tr><td></td><td colspan="4"></td></tr>
<tr><td></td><td colspan="4"></td></tr>
<tr><td></td><td colspan="4"></td></tr>
<tr><td></td><td colspan="4"></td></tr>
<tr><td></td><td colspan="4"></td></tr>
<tr><td>특이
사항</td><td colspan="5"></td></tr>
</table>

※ 자원봉사활동 형태의 학교방역인력은 미작성

[참고 서식]

확 인 서 (예시)

본인은 **학교방역인력**으로 **위촉(채용)**됨에 있어, **학교방역인력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 위촉(채용) 후 **상기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자동 해촉(면직)됨**

결격사유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금고이상의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3) 및 같은 목 7)부터 9)까지의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나 종사자
4.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년 월 일

확인자 : (서명)

○○ 학교장 귀하

서식1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학년/반	학생 성명	보호자 성명	보호자 연락처

본인 또는 가족(동거인)의 해외여행력	여행자	여행일자	여행 국가

일자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가정에서 측정한 체온(℃) (또는 발열 여부)	*정상*	*36.5*				
(발열시 해열제 복용 여부)						
호흡기 증상 등 유무*	*없음*					
기타 증상 (두통, 권태감, 설사 등)	*없음*					
보호자 확인						
일자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가정에서 측정한 체온(℃) (또는 발열 여부)						
(발열시 해열제 복용 여부)						
호흡기 증상 등 유무*						
기타 증상 (두통, 권태감, 설사 등)						
보호자 확인						

* 기침, 호흡곤란. 인후통

※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발견되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는 학생이 가정에서 매일 자기건강관리를 하는데 활용하며, 등교중지 된 학생의 경우에는 학교 복귀시 출결증빙용으로 제출

※ 학교 실정에 맞게 변경하여 사용

서식2 발열검사 결과 발견된 코로나19 의심증상자 관리 서식

연번	이름	(소속)학년/반	날짜	시간	체온(℃)[1]	호흡기 증상[2]					
						① 기침	② 인후통	③ 호흡곤란	④ 권태감	⑤ 기타	특이사항
				09:00	37.5	-	-	-	√	설사	등교시 발견
				11:00	37.5	√	√	-		설사	수업중 발견

1) 비접촉식 체온계 또는 열화상 카메라에서 인지되면 고막체온계로 재확인

2) 호흡기 증상은 학생은 설문을 통해 발열검사 실시자가 기록하고, 교직원은 직접 기록

※ 학교실정에 맞게 변경하여 사용

서식3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출근중지 된 교직원 모니터링 서식

연번	성명	증상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	/	/	/
		1. 체온	오전 (:)	정상			
			오전 (:)	정상			
		2. 임상증상					
		① 기침					
		② 인후통					
		③ 호흡곤란					
		④ 권태감					
		⑤ 기타 증상					

연번	성명	증상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	/	/	/
		1. 체온	오전 (:)	정상			
			오전 (:)	정상			
		2. 임상증상					
		① 기침					
		② 인후통					
		③ 호흡곤란					
		④ 권태감					
		⑤ 기타 증상					

※ 학교실정에 맞게 변경하여 사용

서식 4 방문자 관리 서식

날짜	시간		이름	소속 / 연락처	방문 목적	방문 장소	체온 (℃)[1]	호흡기 증상[2]	특이 사항
	입(入)	출(出)							
4.6	10:30	11:00	000	교육부 / 010-0000-	회의	행정실	36.5	없음	

1) 비접촉식 체온계 또는 열화상 카메라에서 인지되면 고막체온계로 재확인

2) 호흡기 증상은 방문객이 직접 기록

※ 학교실정에 맞게 변경하여 사용,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전자출입명부 등으로 대체 가능)